

2023년 1분기

#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

## I. 국가별 통관거부사례

1. '23년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동향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4. 1분기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동향

## II. 국가별 리콜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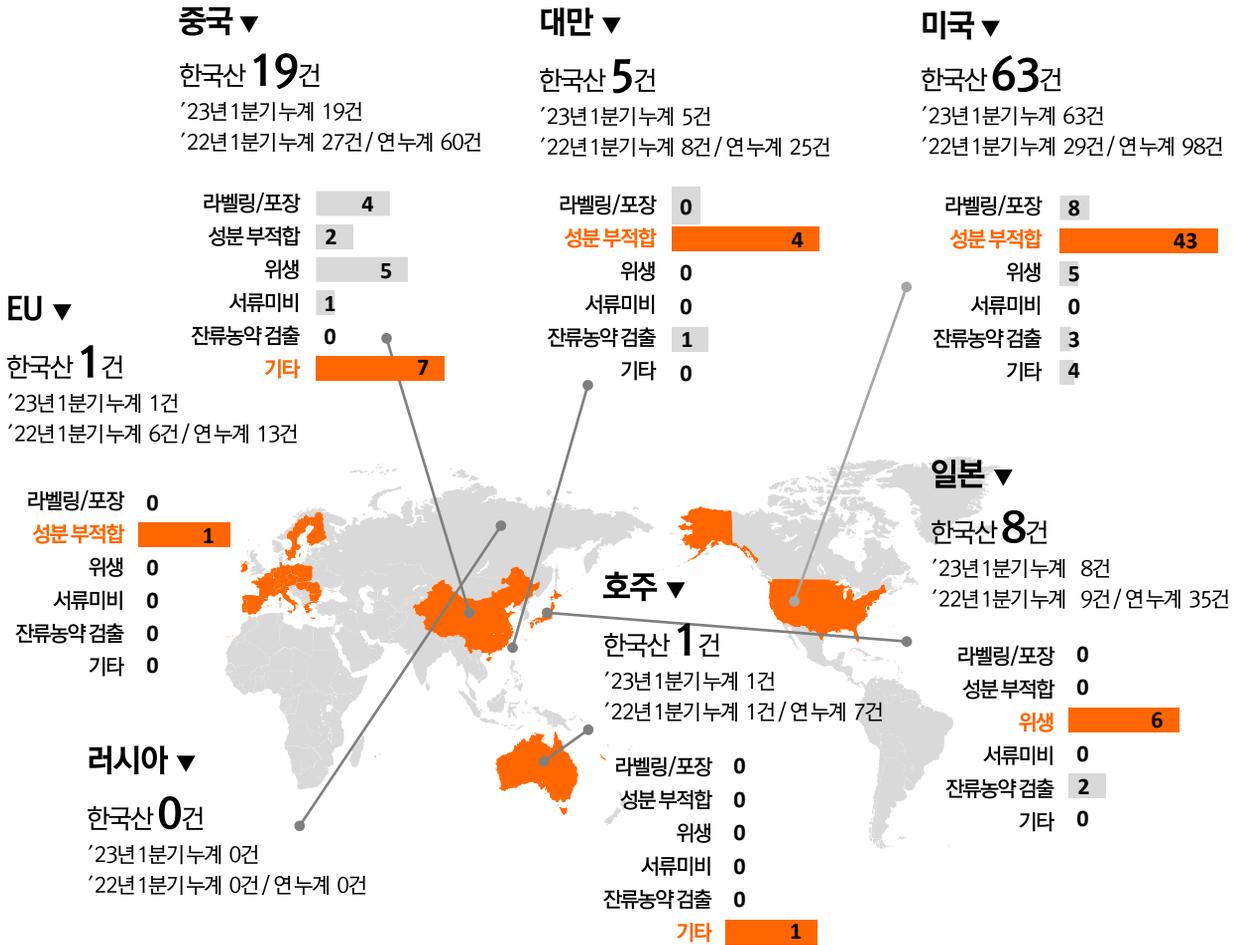
1. '23년 1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동향
2. 1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3. 1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 III. 1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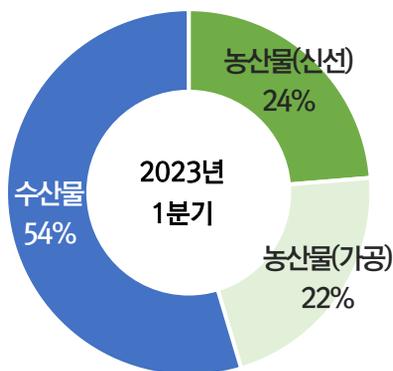
# I. 국가별 통관거부사례

## 1. '23년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동향

한국산 수입 통관거부 국가별 현황 : ('22년 1분기) 총 80건 → ('23년 1분기) 총 97건



### 한국산 수입 통관거부 품목별 현황



**해조류** / 총 42건  
미국 40건, 중국 2건

**기타조제 농산품** / 총 11건  
중국 5건, 미국 4건,  
대만 1건, EU 1건

**채소류** / 총 7건  
미국 4건, 일본 2건  
대만 1건

**포유 가축 육류** / 총 7건  
중국 7건

**버섯류(농산물)** / 총 4건  
미국 4건

**연체동물** / 총 4건  
미국 2건, 일본 1건,  
호주 1건

※ 통관거부사례 공시 9개국 중 인도, 캐나다의 경우 2019년 이후 홈페이지에 고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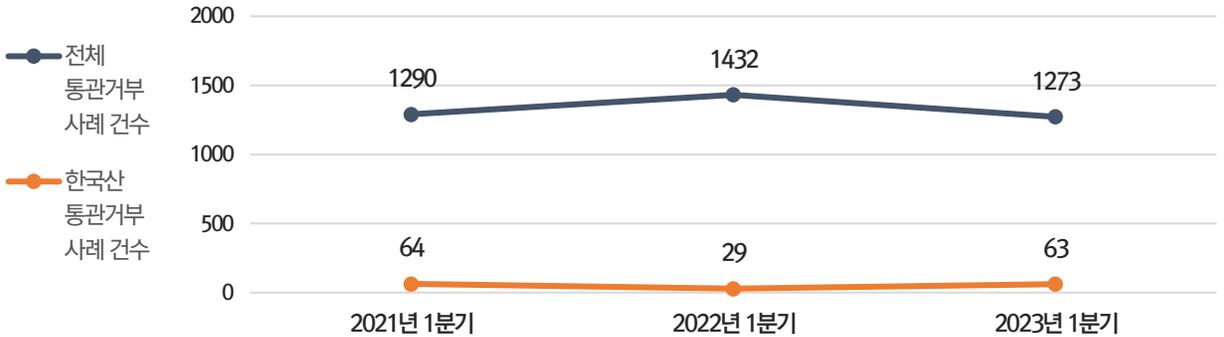
※ 2023년 5월 기준, 중국의 2023년 3월 문제사례와 호주의 2023년 2-3월 문제사례는 홈페이지에 고시되지 않아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임

##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건)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1년(A)			2022년(B)			2023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1월	36	4	40	5	0	5	12	41	53	7	41	48	960%
2월	10	0	10	10	0	10	2	0	2	-8	0	-8	-80%
3월	11	3	14	14	0	14	4	4	8	-10	4	-6	-43%
합계	57	7	64	29	0	29	18	45	63	-11	45	34	117%

###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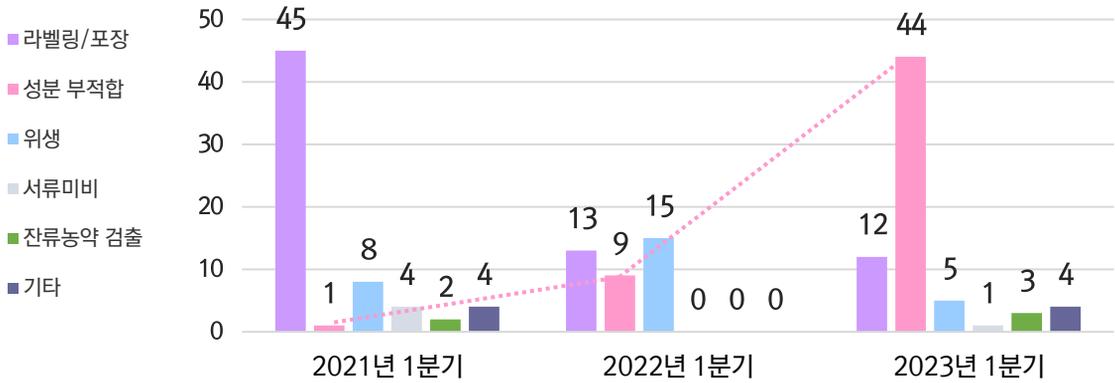
- (주요 품목) 2023년 1분기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가장 많은 통관거부 문제사유가 발생한 품목은 **해조류로, 김 스낵 제품 40건에서 모두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통관거부 됨**
- 두번째로 많은 문제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기타조제 농산품으로, 쌀 크래커 제품과 식이보충제 제품에서 알레르겐 미표기, 필수 라벨 정보의 영어 미표기, 필수 라벨 정보 미표기 등의 라벨링 문제가 확인되어 통관거부 됨



##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해당 수입국은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 발생



거부 사유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45	0	45	13	0	13	11	1	12	-2	1	-1	-8%
성분 부적합	1	0	1	9	0	9	4	40	44	-5	40	35	389%
위생	1	7	8	15	0	15	2	3	5	-13	3	-10	-67%
서류미비	4	0	4	0	0	0	0	1	1	0	1	1	-
잔류농약 검출	2	0	2	0	0	0	3	0	3	3	0	3	-
기타	4	0	4	0	0	0	3	1	4	3	1	4	-
합계	57	7	64	23	14	37	23	46	69	-14	46	32	86%

출처 : 미국 FDA

- 2023년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69건으로 농산물 23건, 수산물 46건임.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건이 증가하였으며, 수산물 관련 문제사례가 전년 대비 46건으로 크게 증가함. 3개년 평균 4%의 증가율로 한국산 문제사례 발생 건수가 증가함
- (성분 부적합) 2023년 1분기 기준 가장 많은 문제 사례가 확인된 문제사유는 성분 부적합 문제(총 44건)이며, 2021년 1분기에는 라벨링/포장 문제, 2022년 1분기에는 위생 문제가 주로 발생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3년 1분기 성분 부적합 문제는 주로 김스낵 제품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외에도 승인받지 못한 신약 성분, 유해색소 등이 확인되어 성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미국의 식품 성분 관련 세부 규정 내용은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num=0&edition=prelim>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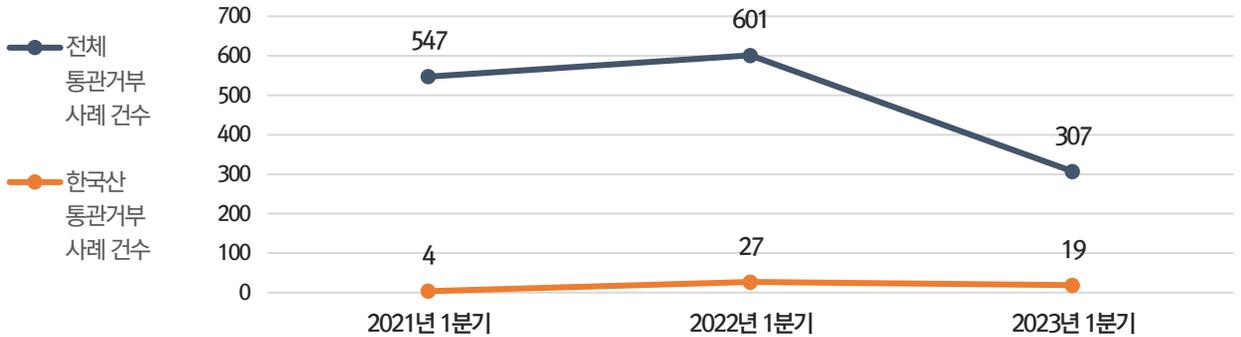


중국

※중국은 2023년 3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3년 1분기 통계 수치는 1월과 2월 수치만 반영됨

###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건)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1년(A)			2022년(B)			2023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1월	1	0	1	6	3	9	1	2	3	-5	-1	-6	-67%
2월	2	1	3	4	7	11	16	0	16	12	-7	5	45%
3월	0	0	0	6	1	7	0	0	0	-6	-1	-7	-100%
합계	3	1	4	16	11	27	17	2	19	1	-9	-8	-30%

###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3년 1분기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가장 많은 통관거부 문제사유가 발생한 품목은 **포유 가축 육류로, 통조림 햄 제품 7건이 검역 검증 승인을 받지 못해 기타 문제로 통관거부 됨**
- 두번째로 많은 문제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기타조제 농산품으로, 주로 효소 등 건강 기능 식품의 라벨이 중국 식품 라벨링 기준에 부적절하여 통관거부 조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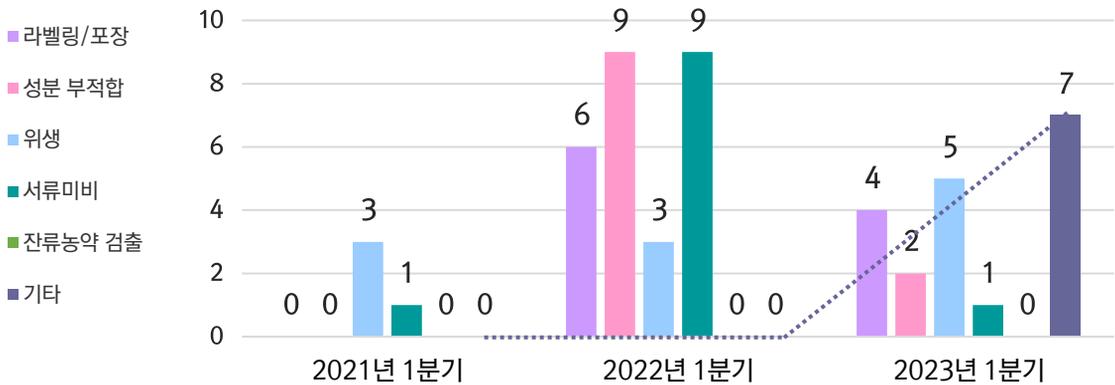
##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중국

※중국은 2023년 3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3년 1분기 통계 수치는 1월과 2월 수치만 반영됨

###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거부 사유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6	0	6	4	0	4	-2	0	-2	-33%
성분 부적합	0	0	0	8	1	9	2	0	2	-6	-1	-7	-78%
위생	2	1	3	1	2	3	3	2	5	2	0	2	67%
서류미비	1	0	1	1	8	9	1	0	1	0	-8	-8	-89%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0	0	0	0	0	0	-
기타	0	0	0	0	0	0	7	0	7	7	0	7	-
<b>합계</b>	<b>3</b>	<b>1</b>	<b>4</b>	<b>16</b>	<b>11</b>	<b>27</b>	<b>17</b>	<b>2</b>	<b>19</b>	<b>1</b>	<b>-9</b>	<b>-8</b>	<b>-30%</b>

출처 : 중국 해관총서

- 2023년 1분기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19건으로, 농산물 17건, 수산물 2건임.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건이 감소하였으며, 수산물 관련 사례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
- 2023년 1분기 기준 가장 많은 문제 사례가 확인된 문제사유는 기타 문제, 2021년 1분기에는 위생 문제, 2022년 1분기에는 성분 부적합 및 서류미비 문제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기타) 2023년 1분기 성분 부적합 문제의 발생 건수는 총 7건으로 모두 농산물 품목의 문제사례였으며, 2021년 및 2022년 1분기의 한국산 문제사례 중 처음으로 기타 문제사유가 확인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3년 1분기 기타 문제는 주로 통조림 햄 제품이 검역 검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중국의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 제 92 조에 의거한 것으로, 세부 지침 규정은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91/index.html>에서 확인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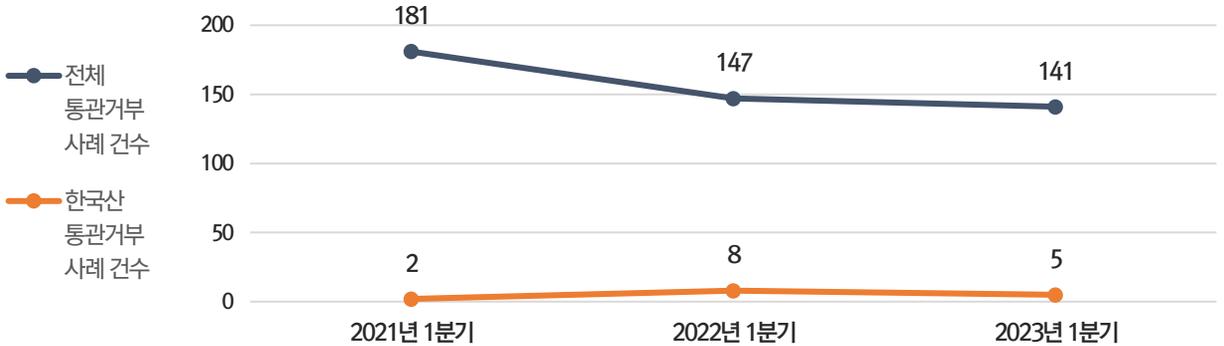
##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대만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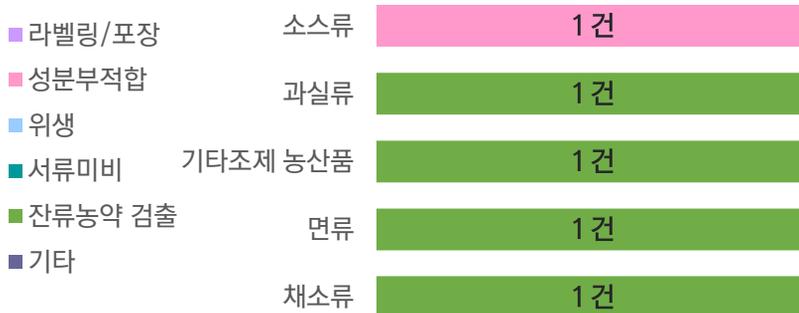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1년(A)			2022년(B)			2023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1월	1	0	1	5	0	5	2	0	2	-3	0	-3	-60%
2월	0	0	0	2	0	2	1	0	1	-1	0	-1	-50%
3월	1	0	1	1	0	1	2	0	2	1	0	1	100%
합계	2	0	2	8	0	8	5	0	5	-3	0	-3	-38%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3년 1분기 대만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통관거부 문제사유가 발생한 품목은 과실류, 기타조제 농산물, 면류, 채소류, 소스류가 각 1건씩으로 확인됨
- 이 중 소스류 제품은 감미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성분 부적합 문제로 통관거부되었으며, 그 외 품목은 산화에틸렌 등의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통관거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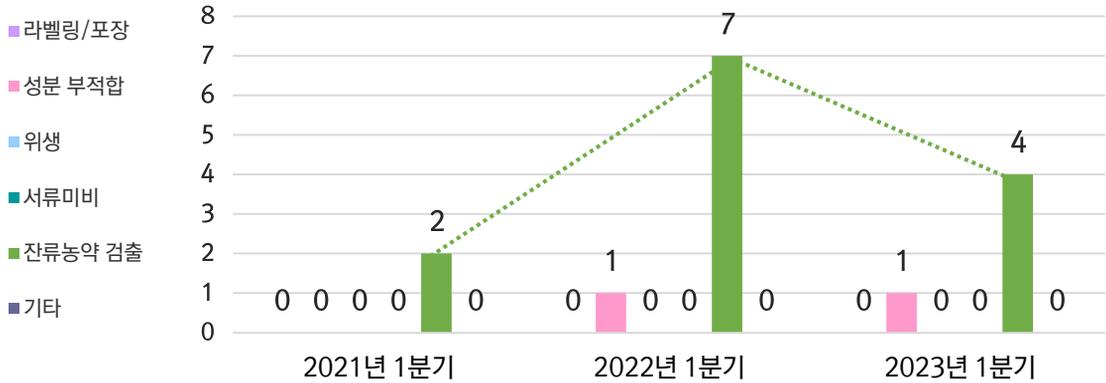


##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대만

###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거부 사유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
성분 부적합	0	0	0	1	0	1	1	0	1	0	0	0	0%
위생	0	0	0	0	0	0	0	0	0	0	0	0	-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
잔류농약 검출	2	0	2	7	0	7	4	0	4	-3	0	-3	-43%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
<b>합계</b>	<b>2</b>	<b>0</b>	<b>2</b>	<b>8</b>	<b>0</b>	<b>8</b>	<b>5</b>	<b>0</b>	<b>5</b>	<b>-3</b>	<b>0</b>	<b>-3</b>	<b>-38%</b>

출처 : 대만 F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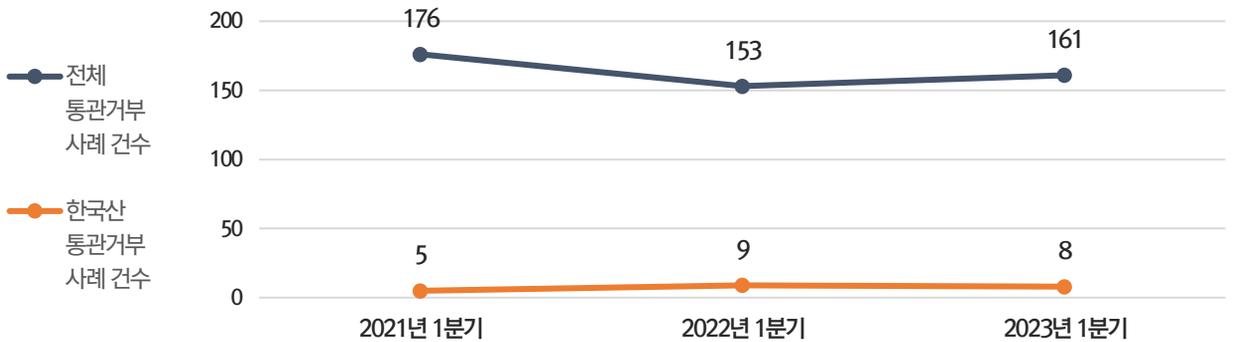
- 2023년 1분기 대만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5건으로,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건이 감소하였으며, 농산물 관련 문제사례의 발생 건수가 감소함
- 2023년 1분기 기준 가장 많은 문제 사례가 확인된 문제사유는 잔류농약 검출 문제로 2021년 1분기와 2022년 1분기에도 잔류농약 검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잔류농약 검출) 2023년 1분기 잔류농약 검출 문제의 발생 건수는 총 4건으로 모두 농산물 품목의 문제 사례였으며, 2021년 및 2022년 1분기에도 한국산 농산물 품목에서 잔류농약 검출 문제가 주로 확인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3년 1분기 한국산 식품의 잔류농약 검출 문제는 신선 식품인 과실류와 채소류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류인 기타조제 농산품과 면류 제품에서 각 1건씩 확인됨
- 대만 FDA는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을 통해 농약별 잔류 허용량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지침 내용은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 ● 일본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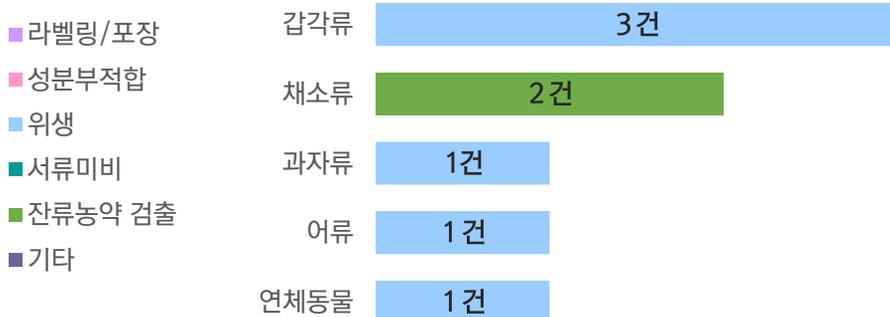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1년(A)			2022년(B)			2023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1월	3	0	3	2	3	5	2	1	3	0	-2	-2	-40%
2월	0	0	0	4	0	4	1	0	1	-3	0	-3	-75%
3월	2	0	2	0	0	0	0	4	4	0	4	4	-
합계	5	0	5	6	3	9	3	5	8	-3	2	-1	-11%

###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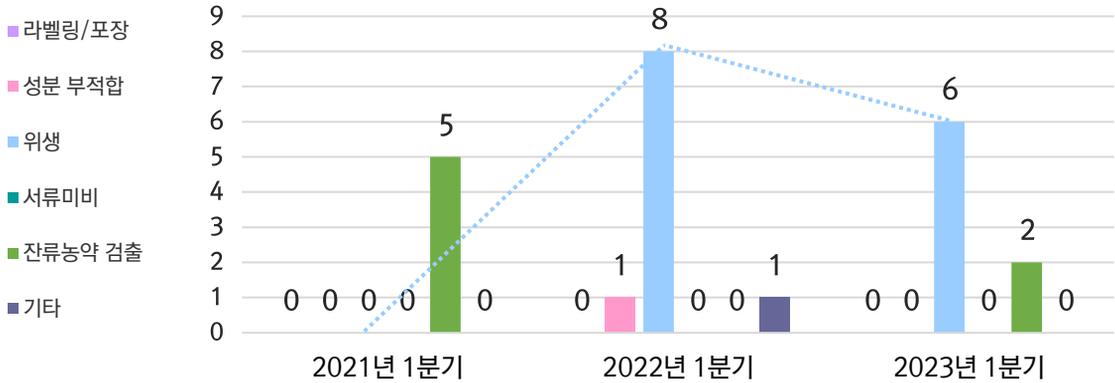
- (주요 품목) 2023년 1분기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통관거부 문제사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갑각류로, 냉동한 새우장 또는 계장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수가 검출되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됨
- 두번째로 많은 문제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채소류이며, 양파와 청고추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헥사코나졸) 성분이 검출되어 통관거부 됨



##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 ● 일본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해당 수입국은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 발생



거부 사유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
성분 부적합	0	0	0	1	0	1	0	0	0	-1	0	-1	-100%
위생	0	0	0	5	3	8	1	5	6	-4	2	-2	-25%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
잔류농약 검출	5	0	5	0	0	0	2	0	2	2	0	2	-
기타	0	0	0	1	0	1	0	0	0	-1	0	-1	-100%
<b>합계</b>	<b>5</b>	<b>0</b>	<b>5</b>	<b>7</b>	<b>3</b>	<b>10</b>	<b>3</b>	<b>5</b>	<b>8</b>	<b>-4</b>	<b>2</b>	<b>-2</b>	<b>-20%</b>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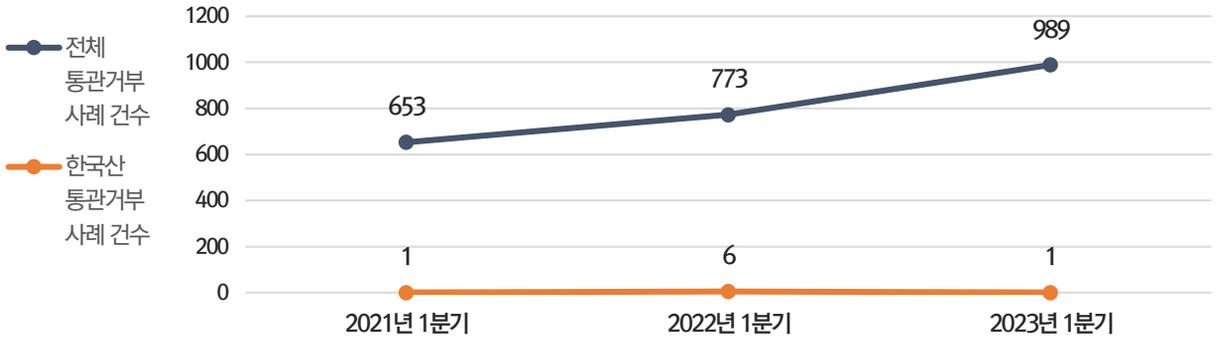
- 2023년 1분기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8건으로 농산물 3건, 수산물 5건임.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건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농산물 관련 문제사례가 감소함.
- 2023년 1분기 가장 많은 문제사례가 확인된 문제사유는 위생 문제, 2021년 1분기에는 잔류농약 검출 문제, 2022년 1분기는 위생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위생) 2023년 1분기 위생 문제의 발생 건수는 총 6건으로 대부분 수산물 품목의 문제사례로 확인되며, 2022년 1분기 통관거부된 한국산 식품에서도 위생 문제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3년 1분기 일본에서 확인된 한국산 식품의 위생 문제는 모두 냉동 식품으로 확인됨.
- 일본은 《식품별 규격기준》을 통해 냉동식품에 대한 위생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지침 내용은 [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건)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1년(A)			2022년(B)			2023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1월	0	0	0	0	0	0	0	0	0	0	0	0	-
2월	0	1	1	2	1	3	1	0	1	-1	-1	-2	-67%
3월	0	0	0	3	0	3	0	0	0	-3	0	-3	-100%
합계	0	1	1	5	1	6	1	0	1	-4	-1	-5	-83%

###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3년 1분기 EU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통관거부된 제품은 기타조제 농산품 1건으로, 식품보충제 제품에 승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및 색소 성분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됨

- 라벨링/포장
- 성분부적합
- 위생
- 서류미비
- 잔류농약 검출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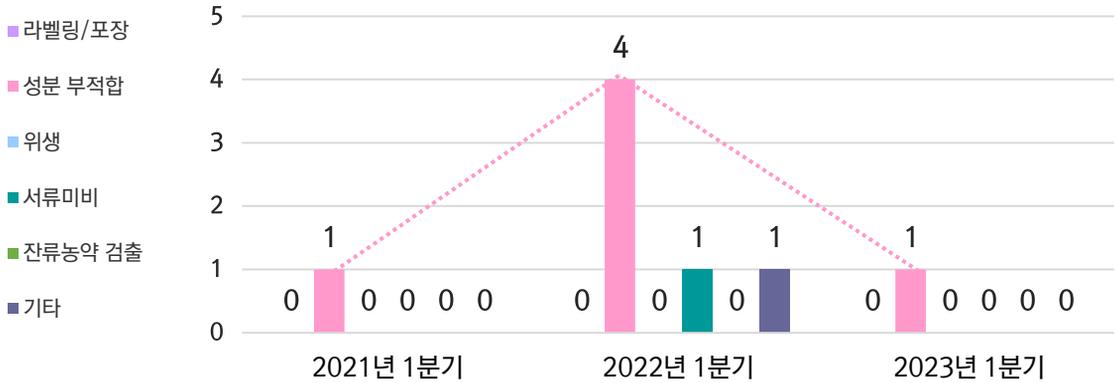
기타조제 농산품

1건

##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거부 사유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
성분 부적합	0	1	1	4	0	4	1	0	1	-3	0	-3	-75%
위생	0	0	0	0	0	0	0	0	0	0	0	0	-
서류미비	0	0	0	1	0	1	0	0	0	-1	0	-1	-100%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0	0	0	0	0	0	-
기타	0	0	0	0	1	1	0	0	0	0	-1	-1	-100%
합계	0	1	1	5	1	6	1	0	1	-4	-1	-5	-83%

출처 : RASFF(유럽연합 식품안전정책 포털)

- 2023년 1분기 EU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농산물 총 1건이며,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건 감소하며 감소 추세를 보임
-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모두 성분 부적합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성분 부적합) 2023년 1분기 성분 부적합 문제의 발생 건수는 총 1건이며, 지난 3개년 기준 1분기에 통관거부된 한국산 식품은 주로 성분 부적합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3년 1분기 EU에서 통관거부된 한국산 식품의 성분 부적합 문제는 식품 보충제 제품에서 미승인된 성분 및 색소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됨
- EU 규정에 따라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식품 첨가물은 한국과 상이하며, 세부 지침 내용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8R1333-20201223>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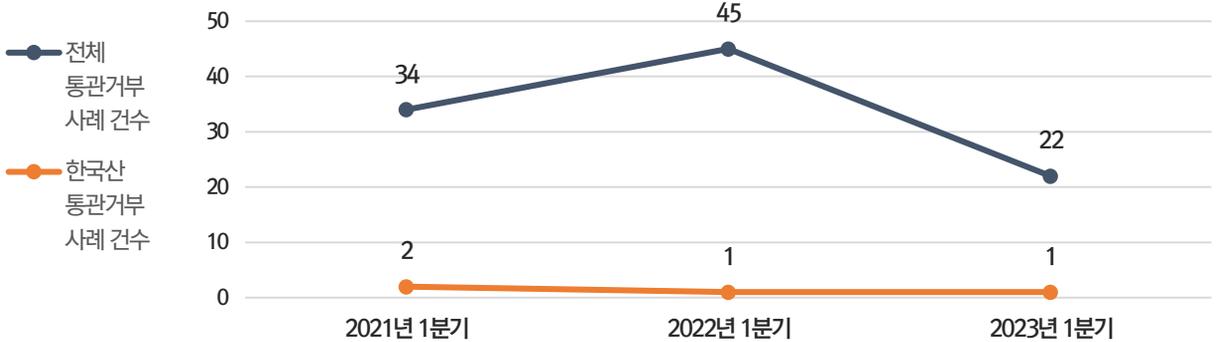


호주

※호주는 2023년 2월 및 3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3년 1분기 통계 수치는 1월 수치만 반영됨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건)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1년(A)			2022년(B)			2023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1월	0	2	2	1	0	1	0	1	1	-1	1	0	-
2월	0	0	0	0	0	0	0	0	0	0	0	0	-67%
3월	0	0	0	0	0	0	0	0	0	0	0	0	-100%
합계	0	2	2	1	0	1	0	1	1	-1	1	0	-83%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3년 1분기 호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통관거부된 제품은 연체동물 1건으로, 한국에서 수입된 건조 굴 제품이 호주에서 수입이 승인된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됨

- 라벨링/포장
- 성분부적합
- 위생
- 서류미비
- 잔류농약 검출
- 기타

연체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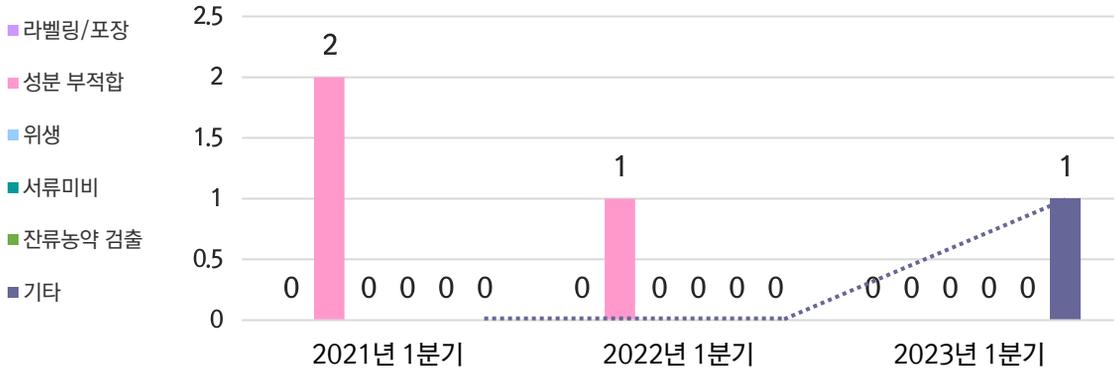
##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호주

※호주는 2023년 2월 및 3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3년 1분기 통계 수치는 1월 수치만 반영됨

###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거부 사유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
성분 부적합	0	2	2	1	0	1	0	0	0	-1	0	-1	-100%
위생	0	0	0	0	0	0	0	0	0	0	0	0	-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0	0	0	0	0	0	-
기타	0	0	0	0	0	0	0	1	1	0	1	1	-
합계	0	2	2	1	0	1	0	1	1	-1	1	0	0%

출처 : 호주뉴질랜드 식품청

- 2023년 1분기 호주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수산물 총 1건이며, 총 문제 건수는 2022년 1분기 발생 건수와 동일함. 2021년 1분기와 2022년 1분기에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의 주요 문제사유는 성분 부적합이었지만 2023년 1분기는 기타 문제가 주요 문제사유로 확인됨
- (기타) 2023년 1분기 기타 문제의 발생 건수는 총 1건이며, 호주의 수입 승인 대상 품목이 아닌 식품이 수입되어 문제가 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3년 1분기 호주에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한국산 식품은 말린 굴 제품임
- 호주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이매패류 품목과 관련된 규정은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bivalve-molluscs>에서 확인할수있음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미국** ※해당 수입국은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 발생

#### ① [라벨링/포장]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가.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지 않음	21 CFR 101.15(c)	2건
농산물	기타곡실류			1건
농산물	채소류			1건
농산물	소스류			1건
임산물	버섯류(임산물)			1건
수산물	어류			1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나. 각 성분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U.S.C §343(i)	1건
농산물	기타곡실류	다. 라벨링 정보 오기 또는 허위 표기	U.S.C §343(a)	1건
농산물	인삼류	라. 사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U.S.C §352(f)	1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마. 제품 라벨에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U.S.C §343(q)	1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바. 주요 알레르겐 미표기	U.S.C §343(w)	1건

#### ② [성분부적합]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버섯류(농산물)	가. 독성물질/독성물질(납) 검출	U.S.C §342(a)(1), (2)	1건
수산물	해조류			40건
농산물	인삼류	나. 승인받지 못한 신약 포함	U.S.C §381(a)(3)	1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1건
농산물	과자류	다. 유해색소 함유	U.S.C §342(c)	1건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 [위생]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버섯류(농산물)	가. 독성물질 리스테리아균 또는 살모넬라균 검출	U.S.C §342(a)(1), (2)	2건
수산물	수산부산물			1건
수산물	연체동물			2건

#### ④ [잔류농약 검출]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채소류	가.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U.S.C §342(a)(2)(B), 40 CFR Part 180	3건

#### ⑤ [서류]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수산물	어류	가. 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U.S.C §381(q)(1), (2)	1건

#### ⑥ [기타]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버섯류(농산물)	가. 외국인 공급자 증명 프로그램 관련 조항 위반	21 CFR part 1 subpart L	1건
임산물	버섯류(임산물)			1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나. 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U.S.C §342(a)(3),(4)	1건
수산물	어류			1건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_가. 필수 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21 CFR 101.15(c)
내용	<p>21 CFR 101.15 식품; 필수 정보의 명명 (Food; prominence of required statements)</p> <p>(c)</p> <p>(1) 라벨 또는 라벨 표시 행위는 당국 지침에 따라 모든 단어, 서술 및 기타 정보가 영어로 표시되어야 함 (단, 푸에르토리코 공화국의 영토 또는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닌 영토에서만 유통되는 경우, 그 지역의 주언어가 영어를 대체할 수 있음)</p> <p>(2) 라벨에 영문명으로 대표할 수 없는 외국어가 사용될 경우, 관련 단어, 문장 및 기타 정보는 외국어로 표시함</p>
URL	<a href="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01.15">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01.15</a>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미국 유통 식품
관련 조항

- (1) 라벨에 표시되는 단어, 서술 및 기타 정보는 영어로 표시되어야 함
- (2)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외국어가 포함될 경우, 해당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음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수입 식품 등
관련 조항

- (1)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사용 가능  
(단,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하며, 원래 용기 ·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리면 안됨)
- (2) 한글로 표시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여 수입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함
- (3)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 표시 스티커에서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 가능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_나. 각 성분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i)
내용	<p>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p> <p>1) 라벨에 정의 및 동일성 규격 표시가 부재할 경우                  (1) 식품의 통칭 혹은 관용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2) 두 개 이상의 성분으로 제조된 경우 각 성분의 통칭 혹은 관용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만약 해당 식품이 채소 혹은 과일 주스 함유 음료일 경우 식품 내 함유되어 있는 과일 혹은 채소 주스의 총 비율 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단 379e(c)에 해당하지 않는 향료, 색소 등은 별도의 명명이 요구되지 않으며, 만약 379e(c)에 해당하지 않는 향료, 색소 등이 각각 판매되고 있을 경우에는 향료 혹은 색소로 별도의 라벨링이 요구됨. (2)의 요건 준수가 실행 불가하거나 사기 혹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경우에는 면제됨</p> <p>2) 중량, 계량 또는 개수 측면에서 내용물의 수량을 정확하게 명시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포장 형태인 경우, 합리적인 변형이 허용되며 소형포장에 대한 예외는 규정이 준수되어야 함</p>
URL	<a href="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amp;num=0&amp;edition=prelim">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amp;num=0&amp;edition=prelim</a>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식품의 명칭은 법이나 규정에 의거한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통상적인 명칭이 없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적절한 이름을 사용해야 함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함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_다. 라벨링 정보 오기 또는 허위 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a)
내용	<p>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a) 허위 또는 오기 라벨                  (1) 해당 라벨이 특정 상황에서 허위이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                  (2) 비타민 또는 미네랄 식품(해당 법령의 제 350조 기준)의 경우, 광고가 내용적 측면에서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법령 제 350조 (b)(2)항을 위반한 라벨일 경우</p>
URL	<a href="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amp;num=0&amp;edition=prelim">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amp;num=0&amp;edition=prelim</a>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제품명 또는 식품 종류
- 순중량소
- 영양성분표
- 성분 및 알레르겐 표시 문구
-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제품명
- 식품유형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 유통기한
-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영양성분
- 용기 · 포장 재질
-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 주의사항
-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표시사항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_라. 사용법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52(f)
내용	<p>U.S.C §352 허위표시 의약품 및 의료기기(Misbranded drugs and devices)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f) 사용법(복용법) 및 경고표시                  (1) 적절한 사용 지침(사용법이 없는 경우)                  (2) 병리학적 상태나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할 수 있는 사용법에 대한 적절한 경고 또는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전하지 않은 용량이나 투여 방법 또는 적용 기간에 대한 적절한 경고가 없는 경우                  단, 모든 의약품 및 의료 기기에 적용되는 이 단락 (1)항의 요구 사항이 공중 보건 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관은 해당 의약품 또는 장치를 이러한 요구 사항에서 면제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함                  (진단용 의료 기기와 관련된 규정 내용 생략)</p> <p>※ 해당 사례는 건조 인삼 관련 제품 사례로, 건강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으로 수출된 제품에 적용된 규정으로 파악됨.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원료를 하나라도 포함할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함</p>
URL	<a href="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0-title21/html/USCODE-2010-title21-chap9-subchapV-partA-sec352.htm">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0-title21/html/USCODE-2010-title21-chap9-subchapV-partA-sec352.htm</a>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분류
----

분류
----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관련 조항(필수 표기 항목)
-----------------

관련 조항(필수 표기 항목)
-----------------

- 제품명(건강보조식품명)
- 내용량(건강보조식품의양)
- 영양성분표
- 성분표
- 제조업체,포장업체또는유통업체의이름과주소

- 건강기능식품표시또는건강기능식품도안
- 제품명
- 업소명및소재지
- 소비기한및보관방법
- 내용량
- 영양정보
- 기능정보
- 섭취량,섭취방법및섭취시주의사항
- 원료명및함량
- 질병의예방및치료를위한의약품이아니라는내용의표현
- 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
- 기타건강기능식품의세부표시기준에서정하는사항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_마.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미포함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q)
내용	<p>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p> <p>(q) 식품영양정보</p> <p>(1) 라벨 혹은 라벨링에 하기의 영양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p> <p>(A) (i) 통상소비량(serving size) 및 해당 식품에 적합한 가정 기준 표시 제공량, 혹은                      (ii) 식품 사용 일 회 제공량이 통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일반 가정 식품 제공량 표시 측정 단위</p> <p>(B) 용기 당 분량 수 혹은 다른 측정 단위</p> <p>(C) 총 열량</p> <p>(i) 모든 열량원 유래                      (ii) 총 지방 유래</p> <p>식품의 각 일회 제공량 혹은 다른 측정단위 내에서</p> <p>(D) 하기의 영양소 함량</p> <p>: 각 일 회 제공량 혹은 다른 측정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복합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총단백질</p> <p>(E) 건강식단규범(Healthy Dietary Practices)을 유지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장관 (Secretary)의 판단이 있을 경우, 라벨 혹은 라벨링에 표시하도록 요구되는 비타민, 미네랄 혹은 다른 영양소</p>
URL	<p><a href="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amp;num=0&amp;edition=prelim">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amp;num=0&amp;edition=prelim</a></p>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미국 라벨링 규정

관련 조항

영양성분표에는 1회 권장섭취량, 총분량(~회분), 총 열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DV%), 첨가 당, 비타민, 미네랄, 기타 성분 등을 포함해야 함

 한국 라벨링 규정

관련 조항

영양성분표에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 총열량,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등을 포함해야 함

<b>Nutrition Facts</b>	
8 servings per container	
<b>Serving size</b>	<b>2/3 cup (55g)</b>
<b>Amount per serving</b>	
<b>Calories</b>	<b>230</b>
	<b>% Daily Value*</b>
<b>Total Fat</b> 8g	<b>10%</b>
Saturated Fat 1g	<b>5%</b>
Trans Fat 0g	
<b>Cholesterol</b> 0mg	<b>0%</b>
<b>Sodium</b> 160mg	<b>7%</b>
<b>Total Carbohydrate</b> 37g	<b>13%</b>
Dietary Fiber 4g	<b>14%</b>
Total Sugars 12g	
Includes 10g Added Sugars	<b>20%</b>
<b>Protein</b> 3g	
Vitamin D 2mcg	10%
Calcium 260mg	20%
Iron 8mg	45%
Potassium 240mg	6%

\*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b>영양정보</b>	총 내용량 00g 000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b>00%</b>
탄수화물 00g	<b>00%</b>
당류 00g	<b>00%</b>
지방 00g	<b>00%</b>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b>00%</b>
콜레스테롤 00mg	<b>00%</b>
단백질 00g	<b>00%</b>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  
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_바. 주요 알레르겐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w)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레르겐 필수 표시대상 : 우유, 계란, 어류,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b>참깨(2023년 1월 1일부로 추가)</b></li> <li>※ 미국, 2023년 1월부터 참깨 알레르기 성분 표시 필수</li> <li>- 식품 라벨에는 사용된 모든 식품 알레르기 항원의 공급원을 표시해야 함</li> <li>- 생선과 갑각류의 경우 그 종류(예. 넙치, 대구, 게, 새우 등)를 표시해야 함</li> <li>- 알레르기 항원의 공급원 정보는 제품 라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명 바로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함유(Contain)’ 문구와 함께 성분목록 바로 뒤 또는 옆에 표시할 수 있음</li> <li>- 제품 라벨에 필수 알레르겐 정보가 부족하거나 교차 접촉으로 인해 우연히 식품 알레르겐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알레르기 성분 표시 규정을 위반한 제품은 불량품으로 간주되어 회수, 수입거부, 압류 등에 처할 수 있음</li> </ul>
URL	<a href="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3AUSC-prelim-title21-chapter9-subchapter4&amp;saved=%7CZ3JhbnVsZWlkOlVTQy1wcmVsaW0tdGI0bGUyMS1zZWN0aW9uMzQy%7C%7C%7C0%7Cfalse%7Cprelim&amp;edition=prelim">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3AUSC-prelim-title21-chapter9-subchapter4&amp;saved=%7CZ3JhbnVsZWlkOlVTQy1wcmVsaW0tdGI0bGUyMS1zZWN0aW9uMzQy%7C%7C%7C0%7Cfalse%7Cprelim&amp;edition=prelim</a>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식품 알레르기 필수 표시대상  
: 우유, 계란, 어류,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참깨(2023년 1월 1일부로 추가)**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식품 알레르기 필수 표시대상  
: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잣,  
호두,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굴·전복·홍합),  
복숭아, 토마토,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 10mg/kg 이상 함유)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성분부적합] 가. 독성물질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a)(1), (2)
내용	<p>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p>(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p> <p>(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p> <p>(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 물질 또는 첨가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경우</p> <p>※ FDA의 <a href="#">Food Chemical Safety</a>에 따르면, FDA는 식품 포장, 보관 또는 기타 취급을 통해 식품 성분 및 식품 접촉 물질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품 공급망 단계의 화학 오염 물질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조치를 취함. 이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화학 오염 물질로는 환경 오염 물질(중금속 오염물질, 공정 오염 물질)과 농약 성분 등이 포함됨</p>
URL	<a href="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amp;num=0&amp;edition=prelim">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amp;num=0&amp;edition=prelim</a>



미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한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 (5) 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도살외의 방식으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 (6) 용기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유독한 혹은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7)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해당 법령의 348조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또는 면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관련 조항

- [식품위생법 제2장] 제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또는 소분한 것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② [성분부적합] 나. 승인받지 못한 신약 포함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81(a)(3)
내용	<p>U.S.C §381수입 수출(Imports and exports)</p> <p>(a) 수입품; 등록된 외국 시설 리스트; 등록되지 않은 외국 시설의 샘플; 시험 및 심사 거부</p> <p>(3) 그러한 물품이 불량하거나, 라벨에 오기가 있거나 'U.S.C §355 신약(New drugs)' 규정을 위반한 경우, §384(a)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자가 §384(a)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1(II) 규정에 따라 국내로의 반입이 금지된 경우, §360(bbb-8d)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되는 성분인 경우</p>
URL	<a href="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81&amp;num=0&amp;edition=prelim">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81&amp;num=0&amp;edition=prelim</a>



미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한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 (5) 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도살외의 방식으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 (6) 용기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유독한 혹은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7)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 (해당 법령의 348조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또는 면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관련 조항

[식품위생법 제2장] 제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또는 소분한 것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성분부적합] \_다. 유해색소 함유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c)
내용	<p>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식품으로 간주함                  (C) 색소 첨가물                  본 타이틀의 섹션 379e(a)의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색상 첨가제이거나 함유하거나 포함하는 경우</p> <p>※ 해당 법령에 의거, 사전에 FDA 인증을 받은 색소첨가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된 색소 첨가물은 모두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p> <p>(*) 식용 색소 첨가물로 허용된 성분은  <a href="https://www.fda.gov/industry/color-additive-inventories/summary-color-additives-use-united-states-foods-drugs-cosmetics-and-medical-devices">https://www.fda.gov/industry/color-additive-inventories/summary-color-additives-use-united-states-foods-drugs-cosmetics-and-medical-devices</a>에서 확인할 수 있음</p>
URL	<a href="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amp;num=0&amp;edition=prelim">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amp;num=0&amp;edition=prelim</a>



**미국 색소 사용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미국 유통 식품
관련 조항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첨가물은 FDA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허용된 식용 색소 목록에 포함된 식용 색소를 사용해야 함



**한국 색소 사용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일반 식품
관련 조항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색소는 사용 대상 식품 및 최대사용량을 설정하고 있음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③ [위생] 가. 독성물질 리스테리아균 또는 살모넬라균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a)(1), (2)
내용	<p>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p> <p>(* 해당 법령에 의거, 식중독 및 음식 관련 질병 발생의 위험을 가진 살모넬라균과 리스테리아균은 건강에 유해한 독성물질로 분류됨</p>
URL	<a href="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amp;num=0&amp;edition=prelim">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amp;num=0&amp;edition=prelim</a>



**미국 미생물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미국 유통 식품
리스테리아균 검출 조항	양성반응 시 부정·불량식품으로 규정
적용 대상	수산물(일반식품)
살모넬라균 검출 조항	양성반응 시 부정·불량식품으로 규정



**한국 미생물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식품 일반(살균제품/분말제품 제외)
리스테리아균 검출 조항	$n(\text{검사 시료수})=5,$ $c(\text{최대 허용 시료수})=0,$ $m(\text{미생물 최소 허용 기준})=0,$ $M(\text{미생물 최대 허용 기준})=10$
적용 대상	수산물 (더 이상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도록 비가식부위를 제거, 세척 등 위생처리한상태)
살모넬라균 검출 조항	$n(\text{검사 시료수})=5,$ $c(\text{최대 허용 시료수})=0,$ $m(\text{미생물 최소 허용 기준})=0/25g$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④ [잔류농약 검출] 가.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a)(2)(B), 40 CFR Part 180
내용	<p>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식품으로 간주함                  (a)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2)(B) Section 346a(a)에 위배되는 안전하지 않은 농약 잔류물</p> <p>※ 식품 내 농약 화학 잔류물에 대한 허용 오차 및 면제 (Tolerances and Exemptions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 in food) 기준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a href="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a3b649316ccb17c31211db2edd81f789&amp;mc=true&amp;node=pt40.24.180&amp;rgn=div5">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a3b649316ccb17c31211db2edd81f789&amp;mc=true&amp;node=pt40.24.180&amp;rgn=div5</a></p>
URL	<a href="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21%20section:346a%20edition:prelim)%20R%20(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6a)&amp;f=treesort&amp;num=0&amp;edition=prelim">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21%20section:346a%20edition:prelim)%20R%20(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6a)&amp;f=treesort&amp;num=0&amp;edition=prelim</a>



미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한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 (5) 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도살외의 방식으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 (6) 용기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유독한 혹은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7)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해당 법령의 348조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또는 면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관련 조항

[식품위생법 제2장] 제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또는 소분한 것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⑤ [서류]\_가. 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81(q)(1), (2)
내용	<p>U.S.C §381 수입과 수출(Imports and Exports)                  (q) 수입식품 관련 증명서                  (1) 일반                  보건부 장관은 미국으로의 식품 수입 허가 조건으로 (3)에 기술된 법인은 해당 식품이 요건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혹은 보건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다른 보증서 제출에 대한 요청을 받을 수 있음.                  증명서 혹은 다른 보증서는 수송 관련 인증서, 해당 식품 제조, 처리, 포장 및 보관하는 인증 시설 목록 형식 혹은 보건부 장관이 명시하는 그 밖의 다른 형태로 제출되어야 함</p> <p>(2) 인증서 요청 고려 요소                  보건부 장관은 (1)에 기술된 증명서 요구 식품 결정은 하기를 포함한 식품 위험에 근거함                  (A) 해당 음식과 관련하여 알려진 안전 위험                  (B) 해당 음식의 국가, 지역, 혹은 원산지와 관련하여 알려진 식품 안전 위험                  (C) 보건부 장관의 과학적, 위험 기반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된 결론                  (i) 해당 식품의 국가, 지역 혹은 원산지의 식품안전 프로그램, 시스템, 표준은 요건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 처리, 포장, 보관된 유사 식품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불충분함                  (ii) 증명서는 보건부 장관의 식품 수입 거절 혹은 승인 결정을 보조함                  (D) (7)에 확립된 처리방법에 따라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된 정보</p>
URL	<a href="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81&amp;num=0&amp;edition=prelim">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81&amp;num=0&amp;edition=prelim</a>



**미국 서류 규정 조항**



**한국 서류 규정 조항**

추가 인증서 요청에 대한 조항

- (1) 식품이 요건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 (2) 보건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다른 보증서

추가 인증서 요청에 대한 조항

- (1)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 (2) 생산국 정부 증명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 원료 사용을 입증)
- (3)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관련 서류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⑥ [기타]\_가. 외국인 공급자 증명 프로그램 관련 조항 위반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21 CFR part 1 subpart L
내용	<p>Subpart L 식품 수입업체를 위한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or Food Importers)</p> <p>§ 1.502 (a) 해당 항목(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업체는 수입 식품의 해외 공급업체가 FSVP 418항(특정 식품에 대한 위해 분석 및 위해 기반 예방 통제 관련)과 419항(제품 안전 표준 관련) 및 시행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식품 생산 공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고 보장하기 위해 FSVP를 따라야 함</p> <p>*수입업체는 FSVP를 준수하기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식품 위험성 및 공급업체의 관리 이행 능력 평가, 공급업체 인증, 모니터링 및 교정 조치 등을 시행하고 관련 FSVP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자에게 경고서한이 발행되거나, 수입 거절, 수입 경보 등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p>
URL	<a href="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500">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500</a>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⑥ [기타] \_ 나. 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a)(3),(4)
내용	<p>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p> <p>(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p> <p>(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p> <p>(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p>
URL	<a href="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500">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500</a>



미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한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 (5) 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도살외의 방식으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 (6) 용기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유독한 혹은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7)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 (해당 법령의 348조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또는 면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관련 조항

- [식품위생법 제2장] 제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또는 소분한 것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 **[라벨링/포장]**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가. 라벨 불합격	GB 7718-2011	4건

② **[성분부적합]**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과실류	가. 영양강화제 글루콘산아연 사용범위 초과	GB14880-2012	1건
농산물	음료류	나. 식품첨가물 소테비오사이드 사용량 초과	GB 2760-2014	1건

③ **[위생]**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GB 11674-2010	1건
수산물	해조류		GB19643-2016	2건
농산물	음료	나. 곰팡이수 기준치 초과	GB 7101-2015	2건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④ [서류]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과자류	가. 인증서류 미비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1건

#### ⑤ [기타]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가. 검역검증 승인을 얻지 못함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7건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 ① [라벨링/포장]\_가. 라벨 불합격 관련 세부 규정 정보

<p>관련 규정</p>	<p>식품안전 국가표준 -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7718-2011)</p>
<p>내용</p>	<p>3. 기본 요구사항</p> <p>3.7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된 형태로 부착하면 안됨(스티커라벨 사용 불가)</p> <p>3.8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해야 함(상표 제외). 꾸미는 역할을 하는 각종 예술적인 글씨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p> <p>3.8.1 병음(발음기호)이나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병음 표기가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게 표기되어서는 안 됨</p> <p>3.8.2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중국어와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함. 모든 외국어 표기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상표 제외)</p> <p>3.9 사전포장식품 포장재 및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35cm<sup>2</sup> 이상이면 강제 표시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크기는 1.8mm보다 작아서는 안 됨</p> <p>3.10 판매 단위의 포장에 다양한 품종, 개별 포장으로 단독 판매가 가능한 식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별 포장된 식품마다 따로 식품표시를 해야 함</p> <p>3.11 외부 포장이 쉽게 식별할 수 있거나 외포장재를 통해 내부 포장재(용기)를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강제 표시 내용 또는 일부 강제 표시 내용은 외포장재에 상응하는 내용을 중복 표시하지 않아도 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강제 표시 내용을 표시해야 함</p>
<p>URL</p>	<p><a href="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28222.html">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28222.html</a></p>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_가. 라벨 불합격 관련 세부 규정 정보



**중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선포장 식품
라벨 표기 방식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된 형태로 부착하면 안 됨(스티커라벨 허용 불가)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적 > 35cm<sup>2</sup>인 경우 라벨 내용은 1.8mm보다 커야 하며, <10cm<sup>2</sup>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 일자, 유통기한만 표기 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수입식품 등
라벨 표기 방식

1.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사용 가능 (단,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하며, 원래 용기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 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리면 안 됨)
2. 한글로 표시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여 수입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함
3.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 표시 스티커에서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 가능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성분부적합]\_가. 영양강화제 글루콘산아연 사용범위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식품 영양강화제(GB14880-2012)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 음료류(14.02 과일 및 채소즙류 포함)</li> <li>- 글루콘산아연(아연) 사용기준 : 3mg/kg ~ 20mg/kg</li> </ul>
URL	<a href="https://sppt.cfsa.net.cn:8086/db?type=3&amp;guid=99628CBD-710F-4DF2-BF31-ED9FFBCD44D5">https://sppt.cfsa.net.cn:8086/db?type=3&amp;guid=99628CBD-710F-4DF2-BF31-ED9FFBCD44D5</a>



**중국 영양강화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과일 및 채소즙류
글루콘산아연 사용 기준

3mg/kg ~ 20mg/kg



**한국 영양강화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음료류(다류, 커피 제외)
글루콘산아연 사용 기준

아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1. 음료류(다류, 커피 제외)
2. 시리얼류
3. 특수의료용도식품
4.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5. 건강기능식품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성분부적합] \_나. 식품첨가물 소테비오사이드 사용량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식품첨가물(GB2760-2014)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 음료류</li> <li>- 스테비올배당체 사용 기준 : 최대 사용량 0.2g/kg (스테비올로 계산, 고체 음료는 희석 배수에 따라 사용량 증가)</li> </ul>
URL	<a href="https://sppt.cfsa.net.cn:8086/db?type=2&amp;guid=E13798C0-F243-4ACB-B541-C4E543349BE5">https://sppt.cfsa.net.cn:8086/db?type=2&amp;guid=E13798C0-F243-4ACB-B541-C4E543349BE5</a>



중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음료
스테비올배당체 사용 기준

최대 사용량 0.2g/kg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식품 (주사용 : 감미료)
스테비올배당체 사용 기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1. 설탕
2. 포도당
3. 물엿
4. 벌꿀류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 [위생]\_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유청분말 및 유청단백분말(GB 11674-2010)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 유청분말 및 유청단백분말</li> <li>- 균락총수 검출 기준</li> <li>* 미생물 제한량</li> <li>① 황색포도상구균 /(CFU/g) : n=5, c=2, m=10, M=100</li> <li>② 살모넬라균 /(CFU/g) : n=5, c=0, m=0/25g, M=(-)</li> </ul>
URL	<a href="https://sppt.cfsa.net.cn:8086/db?type=2&amp;guid=806A934C-35AA-44F6-8BE5-110A11B2B4D7">https://sppt.cfsa.net.cn:8086/db?type=2&amp;guid=806A934C-35AA-44F6-8BE5-110A11B2B4D7</a>



**중국 균락총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유청분말 및 유청단백분말
균락총수 검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생물 제한량</li> <li>① 황색포도상구균 /(CFU/g) : n=5, c=2, m=10, M=100</li> <li>② 살모넬라균 /(CFU/g) : n=5, c=0, m=0/25g, M=(-)</li> </ul>



**한국 균락총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기타식품류(효모식품)
균락총수 검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장균 : n=5, c=1, m=0, M=10</li> <li>세균수 : n=5, c=0, m=0</li> <li>(별규제품에 한한다.)</li> </ul>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 [위생]\_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조류 및 그 조제품(GB19643-2016)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 해조류</li> <li>- 균락총수 검출 기준</li> <li>① 균락총수/(CFU/g) : n=5, c=2, m=3 x 10<sup>4</sup>, M=10<sup>5</sup></li> <li>=&gt; 최대 허용 치 : 10,000 CFU/g</li> </ul>
URL	<a href="https://sppt.cfsa.net.cn:8086/db?type=2&amp;guid=99317CC6-B110-4BAA-9B1A-B0A2F3DE26DD">https://sppt.cfsa.net.cn:8086/db?type=2&amp;guid=99317CC6-B110-4BAA-9B1A-B0A2F3DE26DD</a>



**중국 균락총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해조류
균락총수 검출 기준
100,000CFU/g



**한국 균락총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조미김
균락총수 검출 기준
별도 기준치 없음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 [위생]\_나. 곰팡이수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음료(GB 7101-2015)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 음료</li> <li>- 곰팡이 검출 기준 CFU/g 또는 CFU/mL ≤ 20(50)</li> </ul> (*) 팔호 안의 수치는 고체음료에만 적용됨
URL	<a href="https://sppt.cfsa.net.cn:8086/db?type=2&amp;guid=B488DC08-72DC-46CC-B972-960F1293B41C">https://sppt.cfsa.net.cn:8086/db?type=2&amp;guid=B488DC08-72DC-46CC-B972-960F1293B41C</a>



**중국 곰팡이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음료
곰팡이 검출 기준

20(50)CFU/g(또는 CFU/mL) 이하



**한국 곰팡이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기타 음료
곰팡이 검출 기준

- 곰팡이 검출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은 다음과 같음
  - (1) 세균수 : n=5, c=1, m=100, M=1,000  
(분말제품,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 (2) 대장균군 : n=5, c=1, m=0, M=10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④ [서류]\_가. 인증서류 미비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내용	<p>제 8조</p> <p>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은 등록 추천 기업을 심사하고 검사하여 등록 요건에 충족함을 확인한 후에 해관총서에 등록 추천하며 아래의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함</p> <p>(1)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의 추천서</p> <p>(2) 기업 명단과 기업 등록 신청서</p> <p>(3)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영업등록증과 같은 기업 아이덴티티 (identity) 증명 문서</p> <p>(4)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성명서</p> <p>(5)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심사 및 검사 보고서</p> <p>필요한 경우 해관총서는 기업의 공장, 작업장, 냉동 창고의 평면도 및 공정 흐름도와 같은 기업의 식품안전위생 및 방어시스템 관련 문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p> <p>※제 7조 소재국 주무관청이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해야 하는 품목 :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casing),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및 관련 제품, 꿀벌 제품, 알류 및 관련 제품, 식용 유지 및 그 원료, 소를 넣은 밀가루 음식, 식용 곡물, 곡물 제분 공업 제품 및 맥아, 신선 및 탈수 야채와 말린 콩, 조미료, 견과 및 씨앗류, 말린 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과 카카오 열매, 특수용도식품, 건강식품</p> <p>※ 그 외 품목은 직접 등록을 시행하며, 등록 시 하기 서류가 필요함</p> <p>(1) 기업 등록 신청서</p> <p>(2)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이 발급한 영업등록증 등과 같은 기업 아이덴티티(identity) 증명 문서</p> <p>(3) 기업이 본 규정의 요건 충족을 약속하는 성명서</p>
URL	<p><a href="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619591/index.html">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619591/index.html</a></p>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⑤ [기타]\_가. 검역검증 승인을 얻지 못함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海关总署第249号令))
내용	<p>제 6장 식품의 수출입</p> <p>제 92조 수입한 식품·식품첨가제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상품 검사의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합격하여야 한다.</p> <p>수입한 식품·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 검역허가증명서를 받아야 식품 수입이 가능함</p>
URL	<p><a href="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91/index.html">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91/index.html</a></p>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 [성분부적합]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소스류	가. 감미료사카린 0.08g/kg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1건

② [잔류농약 검출]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과실류	가. 플루페녹수론 0.02 ppm, 노발루론 0.03 ppm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3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나. 산화에틸렌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1건
농산물	면류			2건
농산물	채소류	다. 피리벤카브 0.02ppm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1건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성분부적합] 가. 감미료 사카린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 감미료</li> <li>- 사카린 검출 기준 : 불검출</li> </ul> <p>※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제 2조</p> <p>식품첨가물의 이름, 범위, 적용 및 제한은 표 1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해야 함. 해당 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용되어선 안 됨</p> <p>해당 법령에 의거, 감미료 사카린의 사용 규격에 김치 양념과 관련된 품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미료 사카린은 검출되어선 안 됨</p>
URL	<a href="https://law.moj.gov.tw/LawClass/LawContent.aspx?pcode=L0040084">https://law.moj.gov.tw/LawClass/LawContent.aspx?pcode=L0040084</a>



대만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김치 양념
사카린(나트륨) 검출 기준
불검출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절임류/김치류/소스
사카린(나트륨) 검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임류 : 1.0g/kg 이하</li> <li>- 김치류 : 0.2g/kg 이하</li> <li>- 소스 : 0.16g/kg 이하</li> </ul>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잔류농약 검출]\_가. 잔류농약 플루페녹수론 및 노발루론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루페녹수론 검출 기준 : 0.02ppm</li> <li>- 노발루론 검출 기준 : 불검출 기준</li> </ul> <p>※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 15조-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제3조</p> <p>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과 표 2에 제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p> <p>해당 표에 제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p> <p>해당 법령에 의거, 감귤 내 노발루론은 표 1과 2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아야 함</p>
URL	<a href="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a>



대만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감귤
플루페녹수론 및 노발루론 검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루페녹수론 검출 기준 : 0.02ppm</li> <li>- 노발루론 검출 기준 : 불검출</li> </ul>



한국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감귤
플루페녹수론 및 노발루론 검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루페녹수론 검출 기준 : 1.0mg/kg</li> <li>- 노발루론 검출 기준 : 0.5mg/kg</li> </ul>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② [잔류농약 검출] \_나. 잔류농약 산화에틸렌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내용	<p>- 산화 에틸렌(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 : 불검출</p> <p>※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 15조-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제3조</p> <p>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과 표 2에 제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p> <p>해당 표에 제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p> <p>해당 법령에 의거, 잔류농약의 사용 규격에 에틸렌옥사이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검출되어선 안 됨</p>
URL	<a href="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a>



대만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가공식품
산화 에틸렌 검출 기준
불검출



한국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가공식품
산화 에틸렌 검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틸렌옥사이드 : 불검출(PLS 일률기준 0.01ppm)</li> <li>- 2-클로로에탄올 : 잠정 기준 설정 30ppm 이하</li> </ul>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잔류농약 검출]\_다. 잔류농약 피리벤카브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 배추</li> <li>- 피리벤카브 검출 기준 : 불검출</li> </ul> <p>※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 15조-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제3조. 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과 표 2에 제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검출되어선 안 됨</p>
URL	<a href="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a>



대만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가공식품
피리벤카브 검출 기준
불검출



한국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가공식품
피리벤카브 검출 기준
1.0mg/kg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일본**

① **[위생]**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수산물	갑각류	가. 세균수 검출기준 이상 검출	식품별 규격기준	3건
농산물	과자류			1건
수산물	어류	나. 대장균 양성	식품별 규격기준	1건
수산물	연체동물			1건

② **[잔류농약 검출]**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채소류	가. 핵사코나졸 검출	식품, 첨가물 등 규격기준	1건
농산물	채소류			1건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위생]\_가. 세균수 검출기준 이상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 (食品別の規格基準)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 냉동식품(무가열 섭취)</li> <li>- 세균수 검출 기준 : 1g 당 100,000 이하</li> </ul>
URL	<a href="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a>

 일본 세균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냉동식품(무가열 섭취)
세균수 검출 기준	1g당 100,000 이하

 한국 세균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세균수 검출 기준	n=5, c=2, m=100,000, M=500,000 (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 제품은 제외한다)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위생]\_나. 대장균 양성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 (食品別の規格基準)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 냉동식품</li> <li>- 대장균 검출 기준치 : 음성이어야 함</li> </ul> <p>※ 냉동식품은 절단 또는 껍질 제거한 선어패류(생굴 제외)를 동결시킨 것을 포함함</p>
URL	<a href="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a>

● 일본 대장균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냉동식품
대장균 검출 기준	음성 반응이어야 함
적용 대상	냉동식품
대장균 검출 기준	음성 반응이어야 함

🇰🇷 한국 대장균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수산가공식품류
대장균 검출 기준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함)
적용 대상	냉동 수산물
대장균 검출 기준	n=5, c=2, m=0, M=10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잔류농약 검출]\_가. 잔류농약 **헥사코나졸** 기준치 이상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첨가물 등 규격기준 (食品, 添加物等の規格基準)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양파(たまねぎ)</li> <li>- 헥사코나졸 검출 기준치: 일률기준 0.01ppm</li> <li>- 분류: 고추</li> <li>- 헥사코나졸 검출 기준치: 일률기준 0.01ppm</li> </ul>
URL	<a href="http://db.ffcr.or.jp/front/">http://db.ffcr.or.jp/front/</a>

 일본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양파
헥사코나졸 검출 기준	일률기준 0.01ppm
적용 대상	고추
헥사코나졸 검출 기준	일률기준 0.01ppm

적용 대상	양파
헥사코나졸 검출 기준	0.05mg/kg
적용 대상	고추
헥사코나졸 검출 기준	0.5mg/kg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성분부적합]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물	가. 승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폴리아크릴레이트 나트륨 및 E171(이산화티타늄)사용	(EC) No 1333/2008 (EU) 2022/63	1건

#### ◦ ① [성분부적합] \_가. 승인되지 않은 성분 사용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EC) No 1333/2008, (EU) 2022/63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EC) No 1333/2008에 따라, 부속서 2,3의 목록에 포함된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에 사용될 수 있음. 폴리아크릴레이트 나트륨의 경우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li> <li>- E171(이산화티타늄)은 2022년 1월 14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 Regulation (EU) 2022/63에 따라 이산화티타늄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이산화티타늄은 유전 독성, 즉 화학물질이 유전 세포 물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됨</li> </ul>
URL	<a href="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8R1333-20230322&amp;qid=1684128362442">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8R1333-20230322&amp;qid=1684128362442</a> <a href="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22R0063">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22R0063</a>

#### EU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식품보충제
폴리아크릴레이트 나트륨 및 이산화티타늄 사용기준

- (1) 폴리아크릴레이트 나트륨 : 사용불가
- (2) 이산화티타늄 : 사용불가

####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식품보충제
폴리아크릴레이트 나트륨 및 이산화티타늄 사용기준

- (1) 폴리아크릴레이트 나트륨 :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2) 이산화티타늄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철피 또는 캡슐 제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호주

① [기타]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수산물	연체동물	가. 수입 금지 식품	MOL05/2014	1건

◦ ① [기타] \_가. 수입 금지 식품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MOL05/2014
내용	- 굴 수입 조건: 한국산 굴은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 조건」에 따라 호주로 수입이 제한됨
URL	<a href="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bivalve-molluscs">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bivalve-mollusc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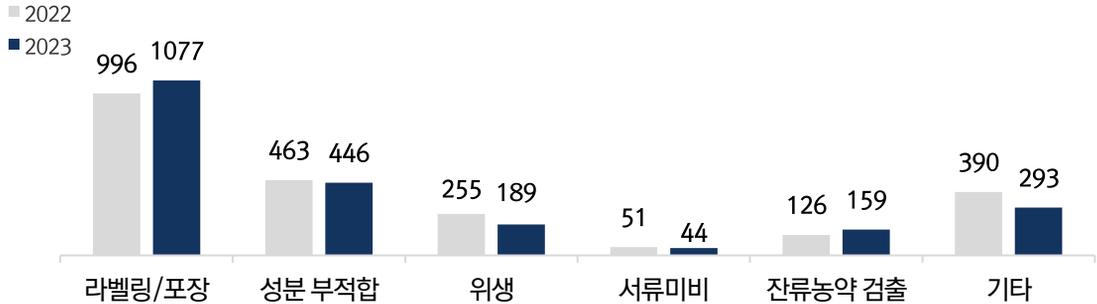
# 4. 1분기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동향

## 글로벌 수입 통관거부 유형별 현황

전년 대비 9% 감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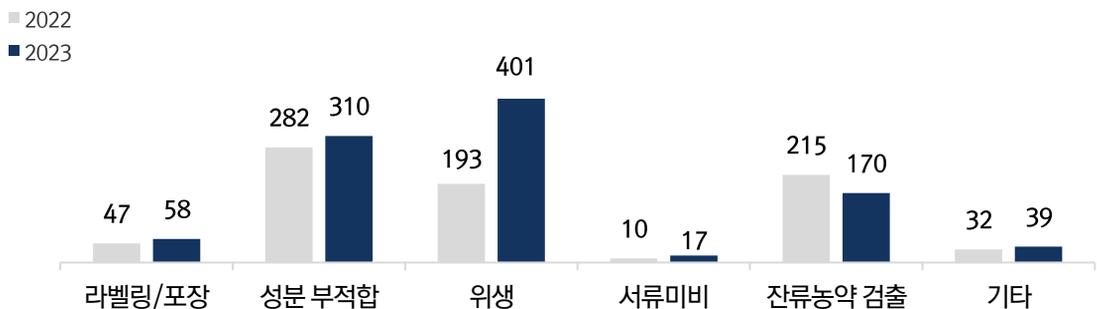
**미국** (22) 총 1,461건 (문제사유 2,281건) → (23) 총 1,336건 (문제사유 2,208건)



전년 대비 27% 증가 ▲



**EU** (22) 총 779건 → (23) 총 990건 (문제사유 99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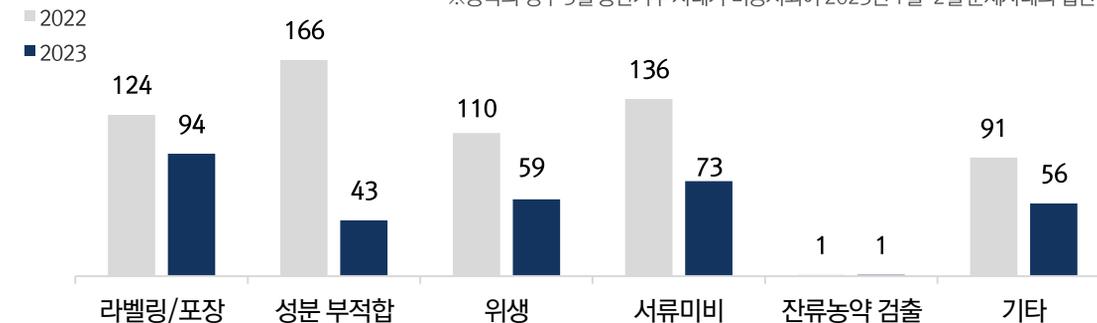


전년 대비 48% 감소 ▼



**중국** (22) 총 628건 → (23) 총 326건

※중국의 경우 3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공시되어 2023년 1월~2월 문제사례의 합산 수치임



※통관거부사례 공시 9개국 중 인도, 캐나다의 경우 2019년 이후 홈페이지에 고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함

※글로벌 통관거부사례는 한국산 통관거부사례를 포함함

※ 미국, EU, 일본의 경우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가 발생하여, 문제사유 건수 별도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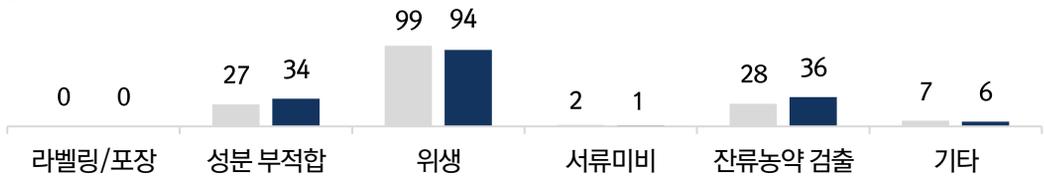
# 4. 1분기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동향

## 글로벌 수입 통관거부 유형별 현황

전년 대비 4% 증가 ▲

**일본** ('22) 총 162건 (문제사유 163건) → ('23) 총 169건 (문제사유 17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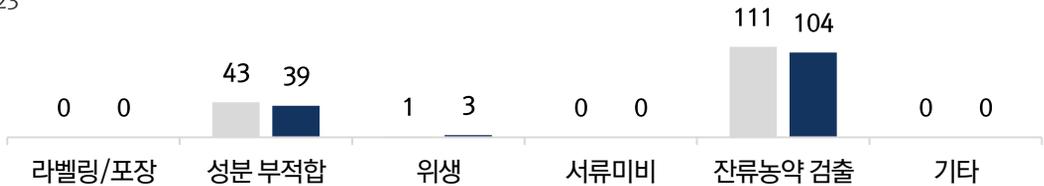
■ 2022  
■ 2023



전년 대비 6% 감소 ▼

**대만** ('22) 총 155건 → ('23) 총 146건

■ 2022  
■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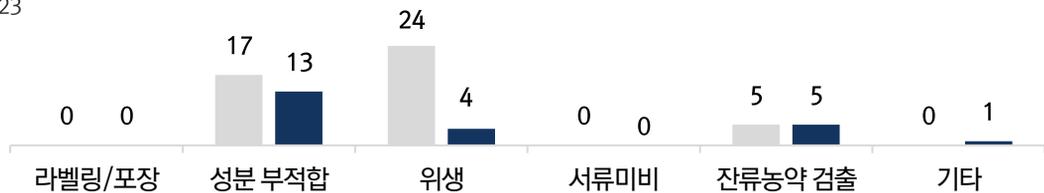


전년 대비 50% 감소 ▼

**호주** ('22) 총 46건 → ('23) 총 23건

※호주의 경우 2~3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공시되어 2023년 1월 문제사례의 합산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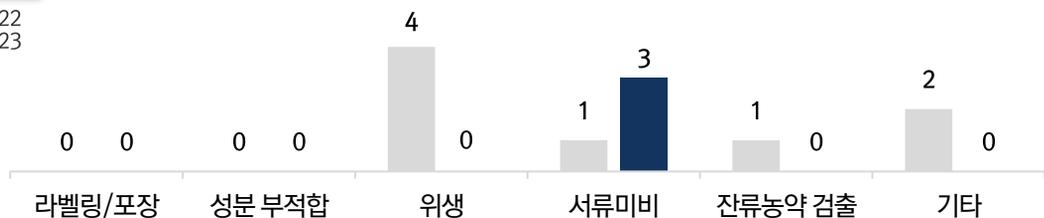
■ 2022  
■ 2023



전년 대비 63% 감소 ▼

**러시아** ('22) 총 8건 → ('23) 총 3건

■ 2022  
■ 2023



※통관거부사례 공시 9개국 중 인도, 캐나다의 경우 2019년 이후 홈페이지에 고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함

※글로벌 통관거부사례는 한국산 통관거부사례를 포함함

※ 미국, EU, 일본의 경우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가 발생하여, 문제사유 건수 별도 집계함

## II. 국가별 리콜사례

# 1. '23년 1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동향

한국산 리콜사례 국가별 현황 : ('22년 1분기) 총 65건 → ('23년 1분기) 총 35건

### 필리핀 ▼

한국산 **22**건  
 '23년 1분기누계 22건  
 '22년 1분기누계 60건 / 연누계 99건

- 라벨링/포장 0
- 성분 부적합 0
- 위생 0
- 서류미비 0
- 잔류농약검출 0
- 기타 **22**

### 일본 ▼

한국산 **8**건  
 '23년 1분기누계 8건  
 '22년 1분기누계 0건 / 연누계 54건

- 라벨링/포장 **5**
- 성분 부적합 2
- 위생 1
- 서류미비 0
- 잔류농약검출 0
- 기타 0

### 호주 ▼

한국산 **3**건  
 '23년 1분기누계 3건  
 '22년 1분기누계 0건 / 연누계 0건

- 라벨링/포장 **2**
- 성분 부적합 0
- 위생 1
- 서류미비 0
- 잔류농약검출 0
- 기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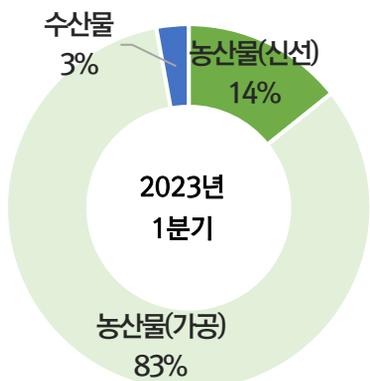
### 뉴질랜드 ▼

한국산 **2**건  
 '23년 1분기누계 2건  
 '22년 1분기누계 0건 / 연누계 0건

- 라벨링/포장 **2**
- 성분 부적합 0
- 위생 0
- 서류미비 0
- 잔류농약검출 0
- 기타 0



## 한국산 리콜사례 품목별 현황



**과자류** / 총 8건  
 일본 2건, 필리핀 2건  
 호주 2건, 뉴질랜드 2건

**면류** / 총 5건  
 일본 3건, 필리핀 2건

**음료** / 총 4건  
 일본 2건, 필리핀 2건

**커피류** / 총 6건  
 필리핀 6건

**소스류** / 총 4건  
 필리핀 4건

**과실류** / 총 2건  
 필리핀 2건

## 2. 1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당해 연간 한국산 주요 리콜사례의 지침 정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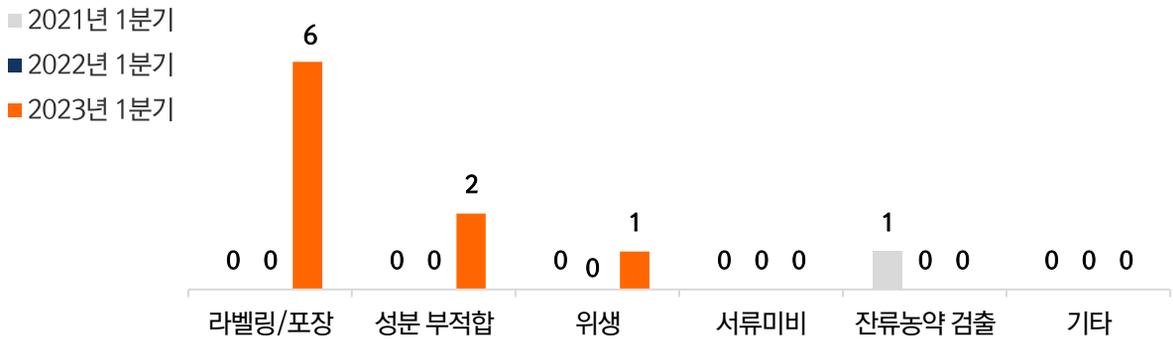
### 일본

한국산 8건 (문제사유 9건)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1	0	8
농산물	1	0	8
수산물	0	0	0

- '23년 1분기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sup>1)</sup> 사례는 총 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함
- 한국산 제품은 면류 3건, 과자류 2건, 음료 2건, 기타조제 농산물 1건이며, 주요 문제 사유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일본어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거나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하지 않아 리콜 조치됨
-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품 라벨 표기 정보를 준수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된 식품의 라벨 정보는 일본어로 표기해야 함

#### ◦ 일본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1-2023년)



#### ◦ 일본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라벨링 / 한국어 표기로 판매(일부 일본어 표기 라벨을 붙이지 않은 채 점포 판매)
-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48년 보건복지부령 제23호)

관련 수입국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48년 보건복지부령 제2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948년 보건복지부령 제23호)	제2장 라벨링 제21조 (1) 별표 3에 따른 판매용 식품 또는 첨가물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i) (라벨 표시 항목 나열) (ii) 전항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사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알기 쉽게 일본어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URL	<a href="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en/laws/view/3991/en">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en/laws/view/3991/en</a>

1) 리콜은 현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리콜사례를 의미함

## 2. 1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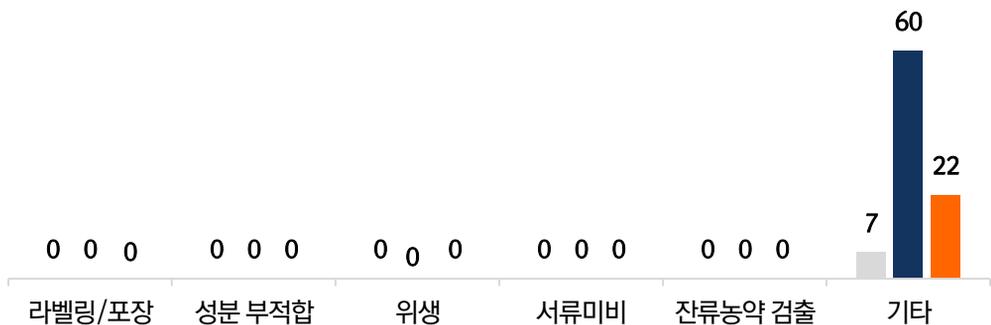
한국산 **22건**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7	60	22
농산물	7	57	21
수산물	0	3	1

- '23년 1분기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사례는 총 2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함
- '23년 1분기 리콜 조치된 한국산 제품은 커피류 6건, 소스류 4건, 과실류와 과자류, 면류, 음료, 포유 가축 육류가 각 2건, 연체동물과 코코아류가 각 1건이며, **모두 기관의 등록 절차를 불이행하여 리콜 조치됨**
- 필리핀의 식품의약품법에 따르면, FDA에 등록되지 않은 건강 제품(식품)은 제조, 수입, 수출, 판매, 판매 공급 및 유통, 이전, 비소비자의 사용, 홍보, 광고 또는 후원이 금지되어 있음

#### ◦ 필리핀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1-2023년)

- 2021년 1분기
- 2022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 필리핀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기타/ 등록되지 않은 상품
- 관련 규정: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관련 수입국 규정	식품의약품법
식품의약품법	제 11조. 다음과 같은 행위와 그 원인은 해당 규정에 의해 금지된다. (j) 이 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지만, FDA에 등록되지 않은 건강 제품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판매 공급, 유통, 이전, 비소비자의 사용, 홍보, 광고 또는 후원
URL	<a href="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09/08/18/republic-act-no-9711/">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09/08/18/republic-act-no-9711/</a>

## 2. 1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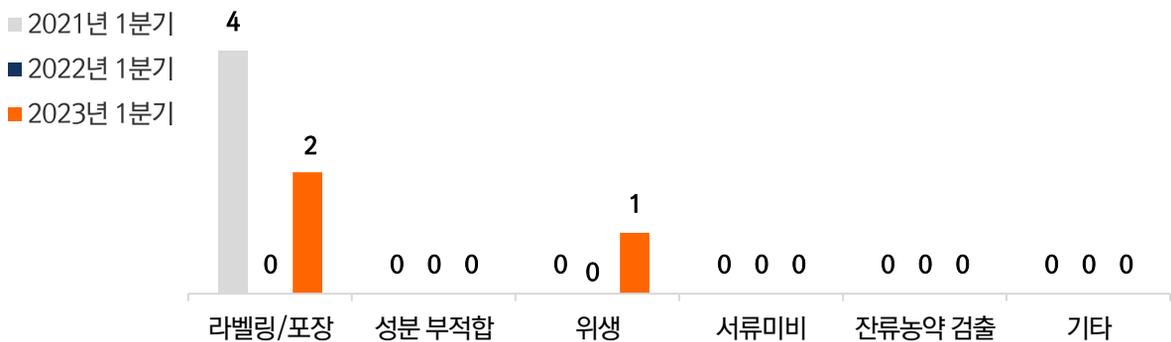
### 호주

### 한국산 3건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4	0	3
농산물	4	0	3
수산물	0	0	0

- '23년 1분기 호주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사례는 총 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23년 1분기 리콜 조치된 한국산 제품은 과자류 2건과 버섯류 1건이며, 주요 문제 유형은 라벨링/포장 문제로 과자류 제품에서 알레르기 성분이 일부 미표기된 것이 확인됨
- 호주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에 따라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을 포함하여 10개의 지정 식품 또는 물질이 판매용 식품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 ◦ 호주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1-2023년)



#### ◦ 호주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 라벨링/ 필수 알레르겐 표기정보 미표기
- 관련 규정 : FSC Standard 1.2.3

관련 수입국 규정	FSC Standard 1.2.3
식품기준법	표준 1.2.3 요청 정보 - 경고 문구, 충고 문구 및 신고 다음의 식품 또는 물질이 판매용 식품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식품 또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필요 (b) 다음 식품 중 하나 또는 그 식품 :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밀/호밀/보리/귀리/ 독일 밀과 해당 곡물의 변종), 갑각류, 계란, 생선, 우유, 땅콩, 콩, 참깨, 견과류(코코넛 제외), 루핀
URL	<a href="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7C00418">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7C00418</a>

## 2. 1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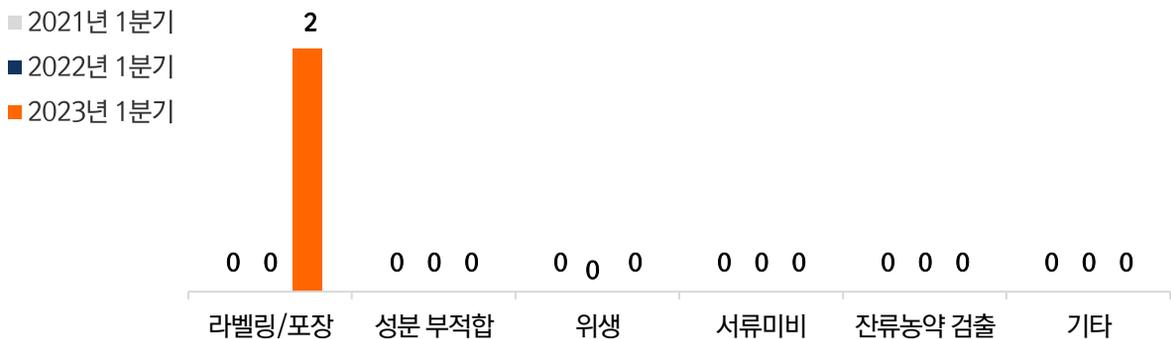
### 뉴질랜드

### 한국산 2건

한국산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0	0	2
농산물	0	0	2
수산물	0	0	0

- '23년 1분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사례는 총 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23년 1분기 리콜 조치된 한국산 제품은 과자류 2건이며, **모두 알레르겐 성분을 표기하지 않아 라벨링/포장 문제로 리콜됨**
- 뉴질랜드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에 따라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을 포함하여 10개의 지정 식품 또는 물질이 판매용 식품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 ◦ 뉴질랜드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1-2023년)



#### ◦ 뉴질랜드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 라벨링/ 필수 알레르겐 표기정보 미표기
- 관련 규정 : FSC Standard 1.2.3

관련 수입국 규정	FSC Standard 1.2.3
식품기준법	표준 1.2.3 요청 정보 - 경고 문구, 충고 문구 및 신고 다음의 식품 또는 물질이 판매용 식품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식품 또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필요 (b) 다음 식품 중 하나 또는 그 식품 :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밀/호밀/보리/귀리/ 독일 밀과 해당 곡물의 변종), 갑각류, 계란, 생선, 우유, 땅콩, 콩, 참깨, 견과류(코코넛 제외), 루핀
URL	<a href="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7C00418">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7C00418</a>

### 3. 1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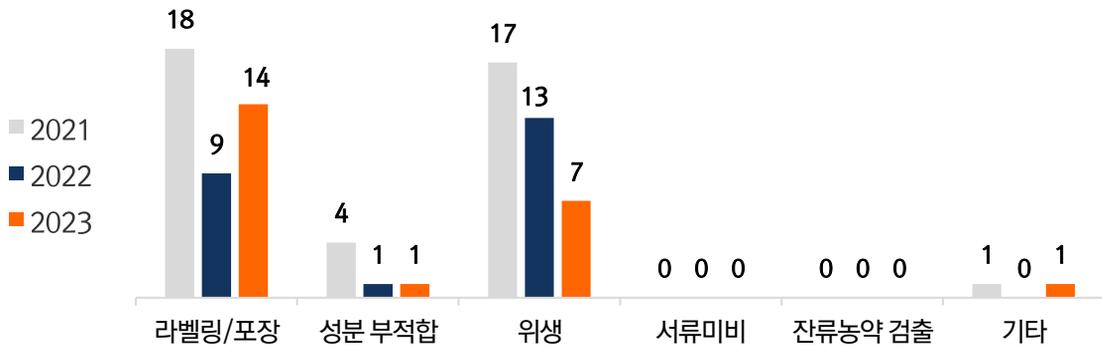
전체 리콜사례 총 23건 / 한국산 3건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40	23	23

2023년 1분기 호주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3건으로 현지산 14건, 수입산 9건이며 한국산은 3건으로 확인됨. 전체 리콜 발생 사유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필수 알레르겐 정보를 미표기 하거나 제품의 저장방법을 미표기한 것이 확인되어 리콜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검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조치됨. 제품별로는 낙농품 5건, 과자류 4건, 과실류와 주류가 각 3건 순으로 조사됨

◦ 호주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1분기/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



####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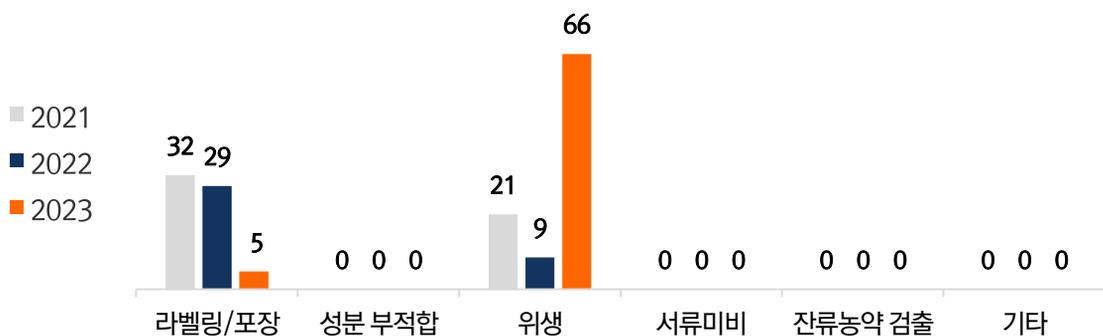
전체 리콜사례 총 92건 / 한국산 2건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53	38	71

2022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92건으로 현지산 54건, 수입산 17건이며 한국산은 총 2건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살모넬라균, A형 감염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 또는 플라스틱 검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2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기하거나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어 리콜 조치됨. 제품별로는 소스류 50건, 과자류 5건, 과실류와 연체동물이 각 4건 순으로 조사됨

◦ 뉴질랜드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1분기/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



### 3. 1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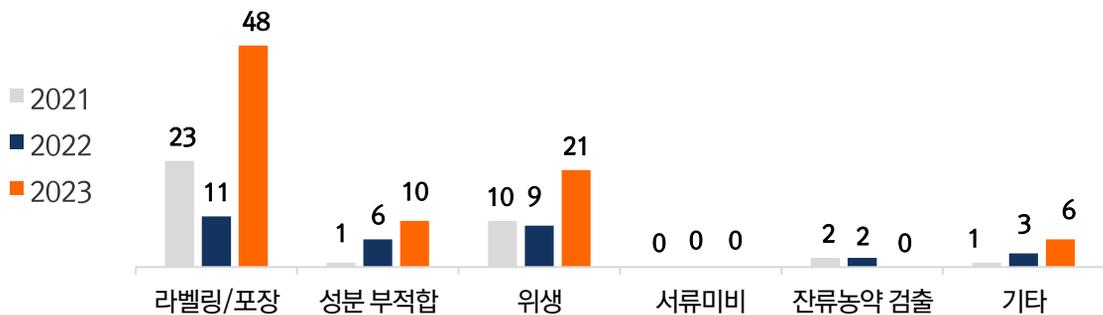
전체 리콜사례 총 **82**건(문제사유 총 85건) / **한국산 8**건(문제사유 총 9건)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37	31	82

2023년 1분기 일본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82건이며 현지산 66건, 수입산 16건이며 한국산은 총 8건으로 확인됨. 이 중 3건의 리콜 사례는 2개 이상의 문제사유가 확인되어, 중복 문제사유를 포함한 문제 유형은 총 85건임. 전체 리콜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알레르기 성분,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기 정보가 누락되거나 일본어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 리콜 조치 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대장균, 곰팡이 등의 미생물 또는 자갈, 금속 파편 등 이물질이 검출되어 리콜됨. 제품별로는 과자류 16건, 기타조제 농산품 10건, 소스류 7건 순임

◦ 일본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1분기/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



####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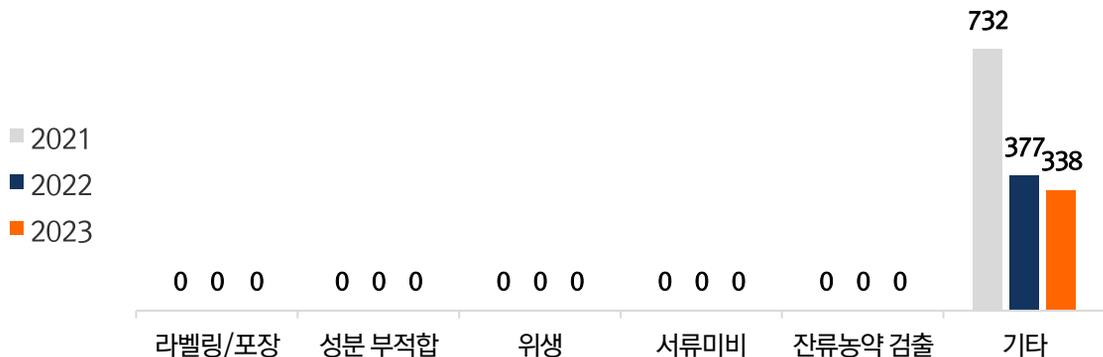
전체 리콜사례 총 **338**건 / **한국산 22**건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732	377	338

2023년 1분기 필리핀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338건으로 현지산 291건, 수입산 47건이며 한국산은 총 22건으로 확인됨. 전체 리콜 사유는 기타 문제로 기관의 등록 절차를 불이행하여 리콜 조치 됨. 제품별로는 과자류 71건, 기타조제 농산품 56건, 과실류 28건 순으로 확인됨

◦ 필리핀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1분기/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



### 3. 1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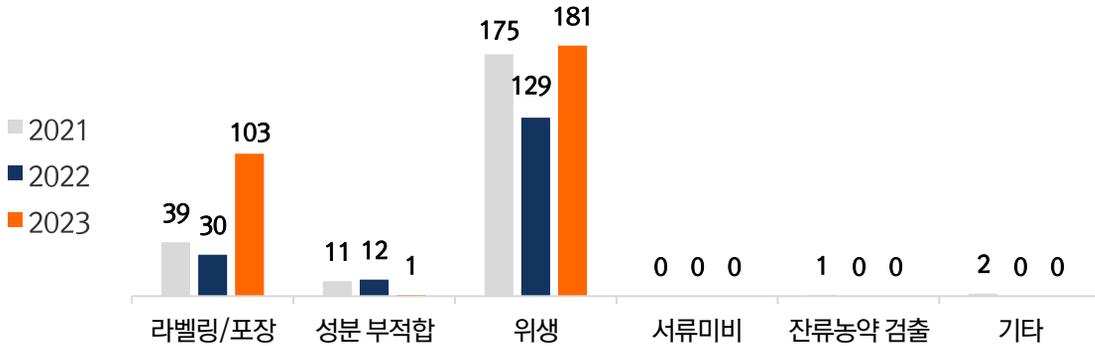
전체 리콜사례 총 **285**건 / 한국산 **0**건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228	171	285

2023년 1분기 미국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85건으로 현지산 279건, 수입산 6건이며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체 리콜 발생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A형 간염 바이러스 등 미생물 오염 가능성과 이물질 검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되었고, 2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주로 필수 알레르겐을 미표기한 것이 확인되어 리콜됨. 제품별로는 과자류 135건, 기타조제 농산품 38건, 코코아류 34건 순으로 나타남

◦ 미국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1분기/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



####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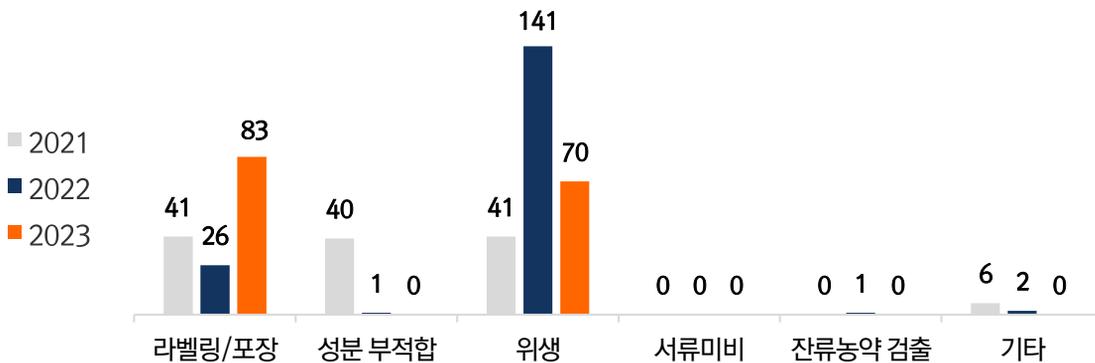
전체 리콜사례 총 **153**건 / 한국산 **0**건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128	171	153

2023년 1분기 캐나다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53건으로 현지산 136건, 수입산 17건이며, 그중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체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주로 알레르기 유발 항원(우유, 계란 등)을 미표기하거나 포장 용기(캔)이 팽창한 것이 확인되어 리콜 조치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등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거나 플라스틱, 금속 조각 등의 이물질이 검출되어 리콜 조치됨. 제품별로는 낙농품 54건, 면류 17건, 과실류 16건 순으로 확인됨

◦ 캐나다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1분기/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



### 3. 1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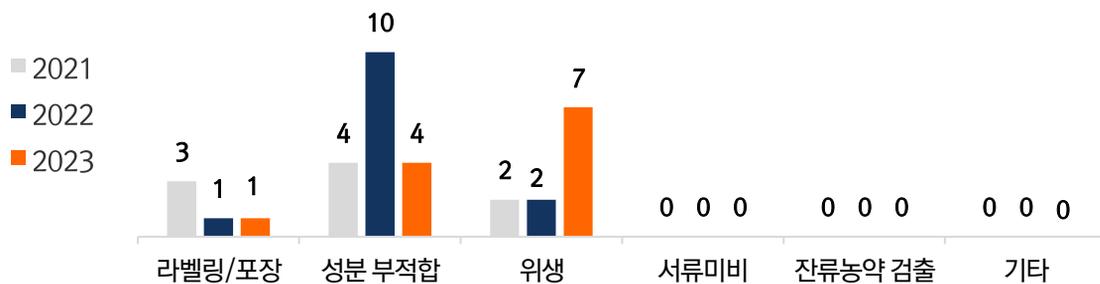
전체 리콜사례 총 285건 / 한국산 0건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228	171	285

2023년 1분기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1건으로 현지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수입산 제품이며 그 중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 중 1건의 리콜 사례는 2개 이상의 문제사유가 확인되어, 중복 문제사유를 포함한 문제 유형은 총 12건임.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또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어 리콜되었으며, 2위는 성분 부적합 문제로 방부제, 인공 감미료,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확인되어 리콜됨. 제품별로는 낙농품 4건, 과자류 3건, 기타조제 농산품과 연체동물, 음료, 채유종실이 각 1건 순으로 조사됨

◦ 싱가포르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1분기/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



####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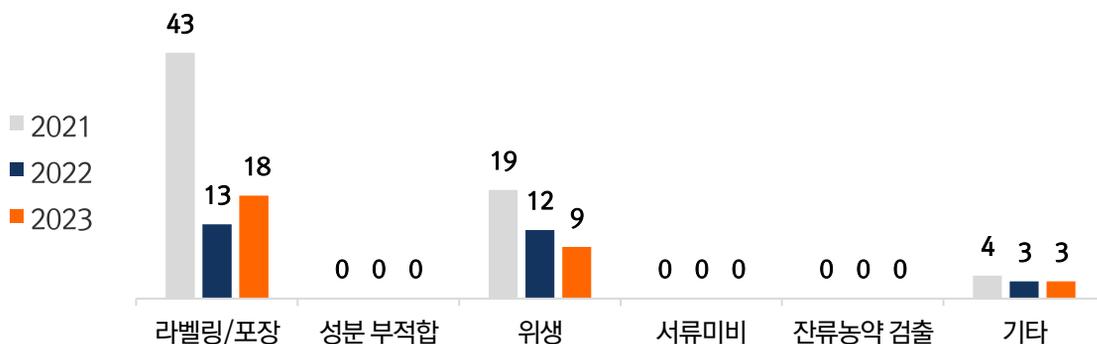
전체 리콜사례 총 30건 / 한국산 0건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66	28	30

2023년 1분기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30건으로 수입산 3건을 제외하고 모두 현지산 제품이며,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알레르기 성분이 검출되거나 라벨링 오류, 포장 용기 불량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아플라톡신 등의 미생물 또는 금속 조각 등의 이물질 검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조치됨. 제품별로는 낙농품 8건, 가공육류와 채소류가 각 3건 순으로 확인됨

◦ 이스라엘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1분기/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



### 3. 1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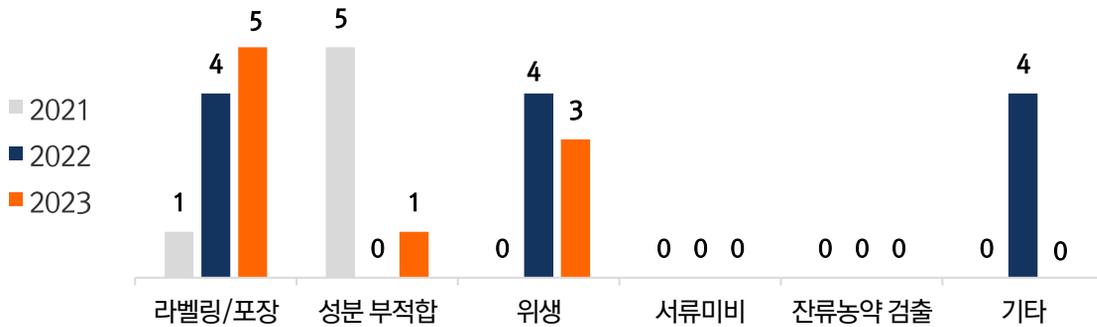
#### 홍콩

전체 리콜사례 총 9건 / 한국산 0건

구분	'21년	'22년	'23년
전체	6	12	9

2023년 1분기 홍콩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9건으로 모두 수입산 제품이며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라벨에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제품 포장에 유리 파손 위험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리콜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또는 살모넬라균의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조치됨. 제품 유형은 낙농품 3건, 소스류 2건, 과자류, 기타 육류, 기타조제 농산품과 주류가 각 1건 순으로 조사됨

◦ 홍콩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1년 1분기/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



### Ⅲ. 1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 2023년 1분기 글로벌 모니터링 이슈 키워드 분석 결과

- 2023.01.01 - 2023.03.31 기준, 총 5,450개 글로벌 식품 이슈 수집
- 키워드 빈도분석 시행, 전체 키워드 중 한국의 주요 수출 식품의 빈도수 확인 및 관련 주요 이슈 추출
- 주요 이슈는 최빈출 식품 키워드 10개 중 한국 수출기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글로벌 이슈 선정

키워드	빈출건수	관련 주요 이슈
닭고기	2,849	홍콩, 음료류의 유리병은 환경보호서에 등록 필요(2023.01)
음료	2,465	인도, 탄산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류의 준수 사항 공고(2023.01)
소스류	2,159	유럽소비자기구, 식음료 및 모든 제품에 탄소 중립 강조 표시 금지 요구(2023.03)
과일	1,980	사우디아라비아, 사전 포장 식품의 알레르겐 표시 규정 초안 발표(2023.01)
채소	1,779	필리핀, 포장 식품의 라벨에 건강 등급 표시 의무화 법안 통과 추진 공고(2023.01)
주류	1,184	필리핀, 가공식품 영양정보표시의 표기 기준 개정안 공고(2023.01)
비스킷, 빵	1,170	싱가포르,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변경 개정안 공고(2023.02)
어류	1,168	
우유 및 조제분유	1,013	
<b>설탕</b>	<b>828</b>	<b>태국, 2023년 4월부터 설탕세 3단계 부과 공고(2023.01)</b> 독일, 당, 염분 및 지방 과다 함유 식품의 어린이 대상 광고를 제한하는 법률 초안 발표(2023.02)

◦ 2023년 1분기 글로벌 주요 모니터링 이슈

**태국, 2023년 4월부터 설탕세 3단계 부과 공고**

태국은 2017년 아시아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하였으며, 4단계에 걸쳐 과세 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함 해당 조치는 설탕이 든 탄산음료, 에너지 및 전해질 음료, 과일 주스, 야채주스 등에 당도 함량에 따라 100ml 당 5밧(baht) 이하의 소비세가 추가 부과되는 것으로, 2023년 4월부터 설탕세 3단계가 하기와 같이 적용됨

※ 설탕세 4단계 적용안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행 일정	2017. 09 ~ 2019. 09	2019. 10 ~ 2023. 03	2023. 04 ~ 2025. 03	2025. 04 ~
당도	소비세/100ml	소비세/100ml	소비세/100ml	소비세/100ml
6 - 8g	0.1밧	0.1밧	0.3밧	1밧
8 - 10g	0.3밧	0.3밧	1밧	3밧
10 - 14g	0.5밧	1밧	3밧	5밧
14 - 18g	1밧	3밧	5밧	5밧
18g 이상	1밧	5밧	5밧	5밧

### Ⅲ. 1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 “태국의 설탕세 3단계 시행 조치”에 대한 현지 전문가 Q&A

[ 현지 전문가 정보 ]

- 이름 : Professor. Veerachai
- 소속 : 까셋삿 대학

Q1. 현재 태국에서 설탕세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면 무엇인지, 2022년 3월까지 시행된 2단계 설탕세 조치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1. 태국의 설탕세는 당도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서 나타나는 비만, 당뇨병, 고혈압 및 기타 관련 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태국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 사항입니다. 따라서 설탕세는 당뇨병 등의 문제 질환과 관련하여 단 음료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통해 공중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Q2. 설탕세는 수입 음료 품목에도 적용이 되는지, 설탕세 부과로 인해 수입 음료 제품에도 영향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EX. 음료 제품의 수입 규모 감소, 태국으로 수입되는 음료의 당도 감소 등)

A2. 네, 물론 설탕세는 수입 음료 제품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태국 수입업체는 음료 제품을 수입할 때 당도에 따라 설탕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설탕세 규제 조치로 인해 수입 음료 제품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판매되는 음료 제품의 당 함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터당 평균 10g의 당류가 첨가되었던 음료 제품의 대부분이 현재는 리터당 7.3g의 당류를 첨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Q3. 현재 설탕세는 음료 품목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설탕세 적용 품목의 범위를 음료외 과자, 라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을까요?

A3. 아니요. 설탕세는 **현행 규제 조치와 같이 음료 품목을 기준으로 세금 규모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과자나 라면과 같이 음료가 아닌 제품에는 설탕세를 부과할 계획이 없습니다.

Q4. 한국에서는 매년 많은 음료 제품이 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음료를 수출하는 식품 기업이 설탕세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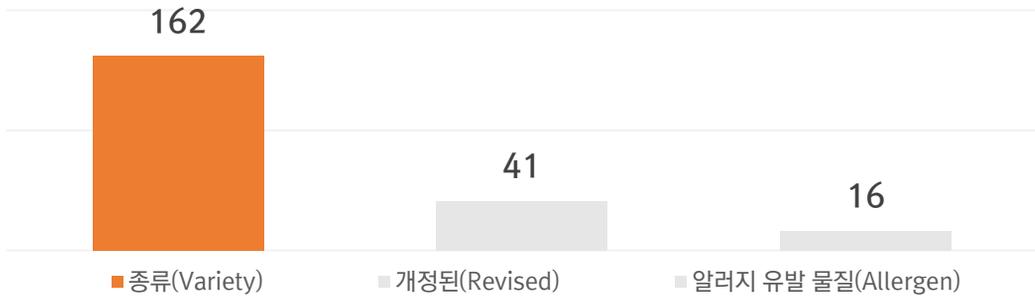
A4. 태국으로 수출되는 음료 제품의 경우, 설탕세 부과 기준에 따라 수입 음료 제품의 가격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설탕 세액의 증가 계획과 시행 일정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강화되는 설탕세 3단계 조치 또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10~14g의 당 함유 시 1바트였던 설탕세는 3바트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당 함량 기준에 따른 설탕세 부과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여 태국으로 수출되는 음료 제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Ⅲ. 1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 ◦ 2023년 1분기 한국 관련 모니터링 이슈 키워드 분석 결과

- 2023.01.01 - 2023.03.31 기준, 식품 비관세장벽 이슈 중 “Korea”를 포함한 이슈 총 744건 수집
- “Korea”를 포함한 이슈의 키워드 빈도분석 수행, 최빈출 키워드를 추출하여 연계 이슈의 빈출 건수 조사



주제어	연관 키워드	연계 빈출 건수
Korea(한국)	종류 ( Variety )	162 건
	개정된 ( Revised )	41 건
	알러지 유발 물질 ( Allergen )	16 건

※연계 빈출 건수는 주제어와 연관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이슈의 수입이다.

#### ◦ 2023년 1분기 한국 관련 주요 모니터링 이슈

##### 일본, 가공식품의 알레르기 의무 표시 품목에 '호두' 추가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표시기준》의 별첨 「알레르겐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표시」를 개정하고,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특정 원재료’ 품목)에 ‘호두’를 추가함

- 일본은 알레르겐 표시 대상 품목을 “특정 원재료” 및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하며, “특정 원재료”에 해당하는 8개 품목은 식품 포장에 **해당 원재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던 **‘호두’가 의무 표시 대상인 “특정 원재료” 항목으로 분류됨**

##### ※ 개정안 변경 사항

- 1) 해당 원재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특정 원재료” :  
새우, 게,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 호두]**
- 2) 해당 원재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가능한 한 표시해야 하는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쇠고기,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호두]**

### Ⅲ. 1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 “일본의 알레르기 의무 표기 대상 ‘호두’ 추가 조치”에 대한 현지 전문가 Q&A

[ 현지 전문가 정보 ]

- 이름 : Manager
- 소속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Q1. 일본의 식품 알레르기 표시 관련 규정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시 식품에 포함되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특정 원재료’와 가능한 표시해야 하는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이 분류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두’가 의무 표시 성분인 ‘특정 원재료’로 재분류된 배경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1. 네, 이번 개정은 호두로 인한 일본 소비자의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10년 간 일본의 알레르기 발병 사례가 약 10배로 증가했으며, 호두는 최근 일본 내에서 발생한 식품 알레르기 문제 사례의 요인 중 3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호두’를 의무 표시 성분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Q2. ‘호두’가 알레르기 의무 표시 품목으로 변경된 개정안은 언제부터 식품 라벨에 적용해야 하나요?

A2. 해당 개정안은 이미 발효되었으나, **산업 및 이해관계자의 적용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까지 전환 기간을 갖습니다.** 이후 국내 제조사나 해외 수출업체가 개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 위반 정도와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조사를 통해 회수(리콜) 명령이 시행되거나 기존 사업체(국내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에 일정기간 운영 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3. 수입 식품의 라벨에도 해당 개정사항이 적용되는 지, 만약 알레르기 표시사항에 ‘호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단계에서 조치가 취해지는 지 궁금합니다.(ex. 수입 통관 단계, 식품 유통 단계 등)

A3. 네, 수입 식품에도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호두 뿐만 아니라 **모든 알레르기 표기 성분이 수입 식품의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표시가 없는 경우 일본 내에서 판매되는 유통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통관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Q4. 2022년 한국에서 수출된 라면, 과자류 등의 가공식품이 일본어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 다량 리콜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라벨 표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4. 네, 2022년에는 잘못된 라벨 표기로 인해 한국 식품이 회수(리콜)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일본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성분은 일본어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특별히 적용되는 요구사항은 없으나, 라벨 표시 언어 규정을 포함하여 수입 식품에 대한 규제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